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일시 : 2024년 11월 30일 (토) 13:00 ~ 17:50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후원

 신한은행,  KPMG 삼정회계법인,  pwc 삼일회계법인

KIM & CHANG,  YULGHON 律村 법무법인(유한) 울촌,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이안세무법인, IAN TAX FIRM

 한국세무사회,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주최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새 깊어진 가을의 끝자락 11월 말일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 계획과 함께 연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각자 분주하실 줄 압니다.

요즘 내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급변하게 될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매우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내공이 쌓여있는 우리 국민이 모두 단합해서 지혜를 모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조세법학회는 올해 세 번째 정기학술발표대회를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와 공동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 학술대회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박종수 교수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랜기간 귀금속산업에 대한 조세 징수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본격적인 논문발표에 앞서 강연을 해주실 차삼준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세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법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랜 고민과 통찰력의 결과물을 내놓으시는 발표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좌장을 맡아주시는 분과 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분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여러 신청자 중에서 특별히 선정한 네 분의 연구자에게 발제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종호 박사의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김수성·유진규 박사의 “특수지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창규 박사의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이한우 세무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4개의 주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의미 있게 제시되는 쟁점 및 과제는 향후 국내 조세정책과 조세법의 합리적인 개선에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학술발표대회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사)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김 두 형 올림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축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조세법학회 김두형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적용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조세법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며, 사회 정의와 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복잡해지는 거래 구조 속에서 조세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조세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조세법의 이론적 심화와 실무적 적용을 위한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세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적용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귀금속업종의 세수 손실 원인과 개선방안”,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학계와 실무자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금속업종의 세수 손실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귀금속업종이라는 특정 업종의 조세 흐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 과세와 관련된 특수직역연금 문제는 세법 체계의 공정성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리화나 과세의 법적 쟁점과 합헌성은 사회 변화에 따른 세법의 적응력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화나의 과세 문제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과세체계 개선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의 주요 항목으로서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취득세 체계는 복잡성과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학문적 담론을 넘어 실질적인 세법 제도의 개선과 조세 정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세금 제도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우리 1만 6천명의 세무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 연구자분들과 협력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세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문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어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를 통해 세무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조세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한국조세법학회 김두형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한 발표를 맡아주신 박종호 박사님, 김수성 박사님, 이창규 교수님, 이한우 세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학술대회가 유익하고 성공적인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 재 이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일 시 : 2024년 11월 30일(토) 13:00 ~ 17:50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세부일정

사회: 임경인((사)한국조세법학회 홍보이사)

13:00~13:20 등록

13:20~13:25 개회사 (김두형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13:25~13:30 축 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13:30~14:00 기조강연 (차삼준 세무사)

제목 : 귀금속관련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

논문발표

〈제1주제〉

14:00~14:50 논문제목 :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발 표 자 : 박종호(박사, 비상임조세심판관)

좌 장 : 박종수(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윤현준(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창준(현빈세무법인 고문)

〈제2주제〉

14:50~15:40 논문제목 : 특수지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으로

발 표 자 :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진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좌 장 : 김병일((前) 강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류연호(변호사, 삼정회계법인)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15:40~16:00 Break Time

〈제3주제〉

16:00~16:50 **논문제목** :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
발 표 자 : 이창규(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좌 장 : 최 원(아주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황헌순(계명대학교 교수)
배효성(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

16:50~17:40 **논문제목**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 표 자 : 이한우(세무사, 화우세무법인)
좌 장 : 양인병(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토 론 자 : 서윤식(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박시훈(박사, 한국세무사회)

17:40~17:50 **폐회사**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contents

- ➡ 기조강연 귀금속관련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 1
발표자 차삼준(세무사)
- ➡ 제1주제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15
발표자 박종호(박사, 비상임조세심판관)
 - 토론문①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한 토론문 ...39
토론자 윤현준(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문②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한 토론문 ...45
토론자 조창준(현빈세무법인 고문)
- ➡ 제2주제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으로 ... 49
발표자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진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토론문①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97
토론자 류연호(변호사, 삼정회계법인)
 - 토론문②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101
토론자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contents

㉓ 제3주제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	105
발표자 이창규(중앙대학교 연구교수)	
■ 토론문①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131
토론자 황헌순(계명대학교 교수)	
■ 토론문②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135
토론자 배효성(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㉓ 제4주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발표자 이한우(세무사, 화우세무법인)	
■ 토론문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159
토론자 서윤식(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토론문②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167
토론자 박시훈(박사, 한국세무사회)	
㉓ 부록 (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173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기조강연

귀금속관련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자 차삼준(세무사)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차삼준

목차

1. 귀금속 관련 업종의 세수손실 현황.....	3
2. 세수 손실 원인.....	4
3. 세수 손실 원인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5
4. 귀금속산업의 세수손실에 대한 개선방안.....	8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10
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7

1. 귀금속 관련 업종의 세수손실 현황

[귀금속산업 부가가치세 5년('17~'21)간 신고현황]

단위: 억원

- 귀금속산업의 총 6개업종(순금 정제제련, 순금도매, 순금소매, 귀금속제품제조, 귀금속제품도매, 귀금속제품소매)의 5년('17~'21)간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분석한바 총납부세액이 8,801억원이나 환급세액이 26,863억원으로 전체 18,062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함
- 5년간 세수손실 18,062억원에 소매매출세액 4,004억원(293억원+3,711억원)을 더하면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22,066억원이 실제 세수손실임

업종	공급가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정련·제련	568,752	32,769	50,119	4,255	21,606
순금도매	171,111	14,719	15,576	251	1,116
순금소매	3,035	293	250	51	22
순금합계	742,898	47,781	65,945	4,557	22,744
제품제조	74,659	5,612	5,298	1,310	1,003
제품도매	234,614	19,861	20,422	2,261	2,870
제품소매	38,894	3,711	3,029	673	246
제품합계	348,167	29,184	28,749	4,244	4,119
총합계	1,091,065	76,965	94,694	8,801	26,863

3

2. 세수 손실 원인

- 산업전체의 매입세액 공제는 총매출세액중 소매매출세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반하여 귀금속산업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발생함
- 원인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없는 환급이 시행되기 때문임
- 현행 제도중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매입가액에 10/110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므로 이 업종은 총환급세액이 총납부세액보다 약10배가 많은 기현상이 발생함.
- 귀금속 업종에서 고금수집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되었고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 총환급세액이 총납부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봄
- 세수손실의 주요 원인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때문으로 확인됨

4

3. 세수손실 원인 -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시행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거래내역]

기재부세제실 22.02.06 제출(억원)

우리나라 귀금속산업의 고질적인 폐단은 전 단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므로 국고유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관행이 있음

이를 막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됨

기획재정부에서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거래내역을 우측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연도	거래내역	국고입금세액
2017년	79,820	999
2018년	82,180	914
2019년	96,543	1,011
2020년	100,577	1,501
2021년	183,329	1,742
합계	542,449	6,167

5

3. 세수손실 원인 -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 2008년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시행

- 세제실에서 제출된 2017년~2021년 5년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거래내역”은 거래금액 542,229억원과 국고입금세액 6,167억원만 있어 거래금액 총액 542,449억원이면 매출세액은 54,244억원으로 여기에서 매입세액공제 환급금, 수입부가세환급,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2항 제2호에 의한 70%환급세액 등을 차감세액을 생략하고 국가에 납부한 세액 6,167억원만 제시하고 있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의하여 세수 6,167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음
- 위 매입세액공제환급금은 당해 거래은행에 공급자가 매입세액으로 입금이 확인되고, 수입부가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국고에 입금되었다는 확인에 의하여 환급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2항 제2호에 의한 70%환급은 매입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어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제도임

6

3. 세수손실 원인 -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2호에 의한 70% 환급

- 공급자가 정련업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지위로 지정은행에 매입세액으로 입금세액이 없다면 지정은행은 공급받는 자가 입금한 정련업자의 매출세액의 70%를 공급자인 정련업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30%는 국가에 납부하게 됨.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납부특례거래로 매입한 순금을 수출하거나 현물시장에 납품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100%를 환급받아가게 됨
- 국가는 30% 납부받고 100%를 환급하므로 결과적으로 70%를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된 것임.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급되는 통계정보를 국세청에 공개청구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1.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7

4. 귀금속산업의 세수손실에 대한 개선방안

■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폐지

1. 세수손실을 유발하는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반드시 폐지(廢止)되어야 한다. 만일 폐지되는 경우 2008년 7월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일 전으로 돌아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 현행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되살아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는 나타나지 않는 세수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순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수출하더라도 가치변동이 없다. 순금을 이용하는 폭탄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이를 수출하여 환급받고, 또 폭탄업체는 수출된 순금을 밀수하여 폭탄금을 만들어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이를 수출하여 환급받는 **회전목마형 폭탄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되살아 난다는 것이다.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출세액의 70%가 세수손실이나 회전목마형 폭탄거래는 매출세액의 100%가 세수손실로 발생함.
3. 이와 같은 고질적인 회전목마형 폭탄거래는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제·환급을 실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제·환급을 실시하는 제도를 귀금속산업에 우선 실시하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임.

※ 폭탄금이란 고액의 금(金)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통되는 금(金)을 말하고, 폭탄업체란 폭탄금을 공급하고 폐업하고 도주하는 업체를 말함

8

4. 귀금속산업의 세수손실에 대한 개선방안

■ 귀금속관련 산업의 국고손실 방지 방안

1. 매출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

귀금속사업자에게만 공급받는자가 공급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어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도록 규정한다.

- 매입세액공제요건을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
- 공급받는 자가 매입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을 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서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변경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영수한 날로하고,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이유가 된다.

3. 가상계좌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시납부 제도 신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가상계좌에 의한 공급대가를 송금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중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사업자 전용계좌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부가세는 공급자의 매출세액으로 수시납부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9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

(기재부의견) 부가가치세 과세원칙 및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할 필요

-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 납세자가 수용하기 어렵고, 거래안정성 훼손으로 거래비용 증가 * (大判, 2009도13474)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완결적요건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전단계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는 무관

-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의한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수시 납부되는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도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에도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은 논리상 맞지 않음

-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폭탄세금계산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또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등 수많은 거래안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나 개정안대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폭탄·위장·가공세금계산서 등과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이 완전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선량한 사업자는 아무런 저항이 없고 환영할 것이나 그러나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자 또는 이들의 불복민원을 대행하는 변호사들만이 개정안을 반대 할 것임 . 기재부는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자들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10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 “大判, 2009두13474” 판결문은 서론과 결론이 모순

대법원 2009두13474 판결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급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를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된다.”라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원칙을 서론에서 설명하고

“물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결론은 전 단계에서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의 유출이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서론과 결론이 모순되는 판결이 아닐수 없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월별 조기환급,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대손세액공제제도 등 기납부세액이 없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법률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으로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허용하는 각종 법률을 정비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이 없는 공제·환급을 배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적극적인 국고유출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11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 황헌순 법학박사의 법논리적인 해석

※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완결적요건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전단계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는무관**
하다는 우리나라 또는 해외 모던학자 들의 통설에 대한 황헌순 박사의 반론

□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세액의 실체가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은 이론상 당연한 전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액을 공제한다는 것은 공제할 대상으로서의 세액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존재는 사전(事前)에 국고에 귀속되어 있어야만 공제할 대상으로서의 실체가 인식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계 당국의 견해를 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종래의 해석 논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논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의 전제가 되는 ‘세액의 존재’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존재’로 바뀌놓은 결과 재원이 없는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만든 법적 논리구성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공제·환급의 재원이 되어야 할 세액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거나 환급되기 때문에 국고손실이 초래된다는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했다. 이는 법적인 논리에 흠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하여 준다. 즉, 전단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국고에 귀속된 해당 세액을 재원으로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12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 황헌순 법학박사의 법논리적인 해석

□ 현행 과세체계에 있어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만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나 세액환급을 인정한다면 국고손실의 문제는 필연적이므로, 기납부세액이 전제되어야만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공급받는 자의 처지에서는 공급자를 선택할 때 공급자의 납부기한 내 납세 가능성을 별도로 예측하여야 하므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래단계의 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안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는 그 결제 대금을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한 수시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추가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제도를 바꾸자는 데에 동의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변경”에 대한 해석

□ 현행 제도에서 기납부세액이 있는가에 관계없이 공제 또는 환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고손실이 생기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의 크기는 논리상으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고손실이 다소라도 존재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제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발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13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 가상계좌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시납부 제도 신설

(기재부의견) 부가가치세 과세원칙 및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할 필요

○ 가상계좌를 운용하여 사실상 거래 시점에 실시간(real-time)으로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고 정산하는 취지:

규제비용 및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할 필요

□ 가상계좌제도는 국세청에서 모든 세금 납부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사업자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새로운 지급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가상계좌에 의한 수시납부 징수제도를 시행하므로 규제비용 및 납세협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전산전문가에 의하면 가상계좌제도를 이용하여 공급자의 매출세액을 수시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 본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조직 구성원들에 의하여 국세청전산망에 새로 업로드할 필드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추가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규제 비용 및 납세협력 비용은 극히 소액이라는 것임

14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변경(발생주의→현금주의)

(기재부의견)

○ 기업 회계기준 및 세법이 발생주의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현금주의로 전환 시 납세자 혼선 및 과세행정 비효율

※ 소득·법인세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며, 부가가치세신고자료는 소득·법인세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 발생하지 않음

법인·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은 현행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외상매출금을 가산하고, 외상매출금 중 회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포함)로 계산된 부분을 차감하게 되면 소득세등 수입금액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만 달라지므로 납세자에게 가산되는 납세협력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과세행정비용 오히려 절감

현행제도에서는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검증기능이 없으나 공급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현금 거래증빙과 세금계산서 발급과 일치되어야 하므로 과세 관청의 검증이 강화되어 과세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15

5.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반론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변경(발생주의→현금주의)

또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송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요구하게 되면, '무자료 판매자',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매출자 탈루', '폭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폭탄사업자',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들을 거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가 걸러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오히려 기존에 발생된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 위와 같은 효과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 세금계산서는 영수증 기능

전단계세액공제법상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받았다는 영수증 기능인데도 현재 외상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상품 송장에 불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서는 과세기간중 매출거래 합계액에서 매입거래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 금액이 확정되어 과세기간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발생주의가 타당하지만,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거래 시점마다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을 받았다는 세금영수증 기능임과 동시에, 세금을 반드시 국가에 납부하겠다는 약정서이므로 현금주의가 논리적으로 타당함.

16

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제안이유

귀금속산업의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한바, 산업전체에서 22,066억 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귀금속가공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은 실제 거래내용의 3%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귀금속산업에서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귀금속가공제품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가. 귀금속가공산업에서 귀금속제품에 포함된 순금(純金)까지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과세 효과가 발생한다. 귀금속 산업의 모든 사업자가 투명하게 매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귀금속 제품에 포함된 순금의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과세효과를 제거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1항). 귀금속사업자는 이렇게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개정안 제106조의 5 제2항 및 제3항)

17

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주요내용

나. 귀금속산업에서 세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환급을 시행하게 하려면 귀금속사업자의 납세의무 발생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대가를 받는 시기로 규정하고(개정안 제106조의 5 제4항 및 제5항),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7항).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보완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8항).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의한 수시납부제도를 신설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2항 제5호 및 제9항)

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고의적인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대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공급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 때를 규정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4항 및 제6항),

라. 귀금속사업자에 한해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환급이 가능하게 하려면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같게 한다. 귀금속산업에 한해서 가상계좌에 의한 수시납부 징수제도를 도입하므로 과세기간내 중간세수가 확보된다.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도 세수의 조기확보 차원에서 무방하다. 따라서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만 한 것으로 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10항).

18

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주요내용

라. 귀금속사업자에 한해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환급이 가능하게 하려면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을 같게 한다. 귀금속산업에 한해서 가상계좌에 의한 수시납부 징수제도를 도입하므로 과세기간내 중간세수가 확보된다.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도 세수의 조기확보 차원에서 무방하다. 따라서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만 한 것으로 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10항).

마. 가상계좌에 의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수시 납부된 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조기에 환급하도록 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11항).

바. 귀금속사업자는 국고가 합법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같은 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규정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다(개정안 제106조의 5 제12항).

사. 귀금속 산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를 삭제한다.

19

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를 삭제한다.

제10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5(귀금속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귀금속제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귀금속사업자'라 한다)는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순금 함량이 표기되고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순금에 대한 매출원가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② 귀금속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이하 "다목적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제1항에 의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된 순금매출원가
4. 작성연월일(귀금속제품의 공급대가를 받은 날) 및 공급연월일
5. 공급대가를 받은 가상 계좌번호

③ 귀금속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생략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매입처별 다목적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과 공급가액에서 제외된 순금 매출원가의 합계액
5. 거래기간의 가상계좌에 의해 수시 납부된 부가가치세 합계액

20

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①~③항은 귀금속산업 음성화 대책이며, ④항 이하는 세수손실 대책임

④귀금속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를 받았거나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귀금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귀금속제품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받거나, 공급하기 전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다목적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귀금속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다목적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 귀금속제품을 공급한 뒤 공급대가를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다른 채무와 상계되어 매출채권이 소멸하는 달의 말일.
2. 귀금속제품을 외상(외상매출 대장에 기록된 매출채권을 말한다)으로 공급한 뒤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다만, 공급계약서에 따라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였으면 받기로 한 달의 말일.
3. 귀금속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장부(외상매출)에 누락시킨 경우 귀금속제품을 공급한 달의 말일.

⑦귀금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귀금속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2. 귀금속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21

부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⑧귀금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또는 납부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제5호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공급가액과 순금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하는 귀금속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하는 귀금속 사업자가 수시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으로 수시납부된 금액은 공급하는 귀금속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납부된 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공급하는 귀금속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⑩귀금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관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⑪귀금속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귀금속사업자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⑫귀금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같은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적용을 배제한다.

22



제1 주제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발표자 박종호(박사, 비상임조세심판관)

(사)한국조세법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문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관한 소고

- 의미있는 조세심판결정사례 평석-

CONTENTS

I. 여는 글	2. 지방세법
II. 사안의 개요	3. 건축법
1. 신고 및 부과처분 요지	4. 건축법상 면적의 정의와 그 산정예시 해설
2. 쟁 점	IV. 그 간의 유사해석사례
3. 당사자 주장	V.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
III. 관련 법령	VI. 평석 및 세법손질
1. 소득세법	

2024.11.30.

법학박사·세무사 박 종 호

I. 여는 글

□ [요지] 최근 간단하면서도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조세심판원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과 제도개선을 촉구코자 함

○ ○ ○
그간 세법상 주택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하여 조세주무부처나 재결청 또는 대법원에서는 법해석의 기본원칙인 문리해석을 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법문에도 일관되지 않고 각 사안에 따라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에 치우쳐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 주는 듯한 행태가 엿보이는 측면이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기준초과토지면적을 비사업용으로 중과세)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에 있어 관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주택부수토지 초과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이하 “이 사건 조항”)의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관한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 사례에 적용된 이 사건 조항과 관련 건축법에서 각 규율하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수평투영면적 등의 정의와 그 산정례를 짚어본 다음 그간의 행정적 해석, 사법적 해석을 분석한 후 이 사건 조항에 적용한 면적이 적법·타당한지를 고찰·평석해 보고 나아가 관련 세법규정도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II. 사안의 개요

1. 신고 및 부과처분 요지

(1) 청구인은 서울시 00구에 소재한 토지 302㎡(이하 “주택부수토지”), 지하1층 및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다가 2022년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주택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그 초과분 31㎡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4년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3) 사건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16	2022	2022
△	△	△
쟁점주택 신축	쟁점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신고납부 - 부수토지는 주택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 적용
2024.		2024.8.
△		△
처분청이 경정고지		조세심판결정 (인용)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중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초과토지는 비사업용토지 로 중과세 - 건물이 정착된 면적 : 건축법상의 건축면적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로서 초과면적 없음 - 건물이 정착된 면적 : 건축법상 건축면적이 아닌 전체건물의 수평투영면적

2. 쟁점

소득세법상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에 있어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건축법상 건축면적인가 수평투영면적인가

3.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쟁점주택의 지상층의 건물면적과 지하층면적(주택건물의 지표면과 대지 가중평균 레벨로부터 1m이하에 있음¹⁾)을 합하면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3배이내가 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주택건물의 공부상 건축면적을 건물이 정착된 면적으로 보아 그 기준면적 초과면적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2) 처분청

관계 규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이고,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하여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1층의 바닥면적으로 판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한 바 있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축면적은 90.29㎡이므로 대지면적 302㎡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다.

청 구 인	처 분 청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법상 건축면적

3) 구분실익 : 지하층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III.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55조의 기본세율 + 10% (세율표 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령

- 1) 쉼터주택은 지하1층, 지상 2층의 구조로서 지하층은 지상층 주택 바로 밑에 있지 않고 그 옆쪽 지하에 위치하고 지표면에서 1m이하로 돌출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1) 건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垞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지하층 높이의 반이상이 지하(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1) 전통사찰 : 4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3) 한옥 : 2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7) 그 밖의 건축물 : 1m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4. 건축법상 면적의 정의와 그 산정예시 해설

- 건축법 제2조, 제84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건축물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2021.12.30. 제정)

(1) 대지면적

- △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축조되는 영역으로서 공간정보관리법(구.지적법)상 쏘와 차이가 있으며,
- △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소요너비 미달도로 및 너비8m미만 도로의 모퉁이의 건축선안의 면적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대지면적²⁾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³⁾ ...평지의 대지면적 (경사지의 대지면적 ×)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의 폭×대지의 길이

*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예시)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⁴⁾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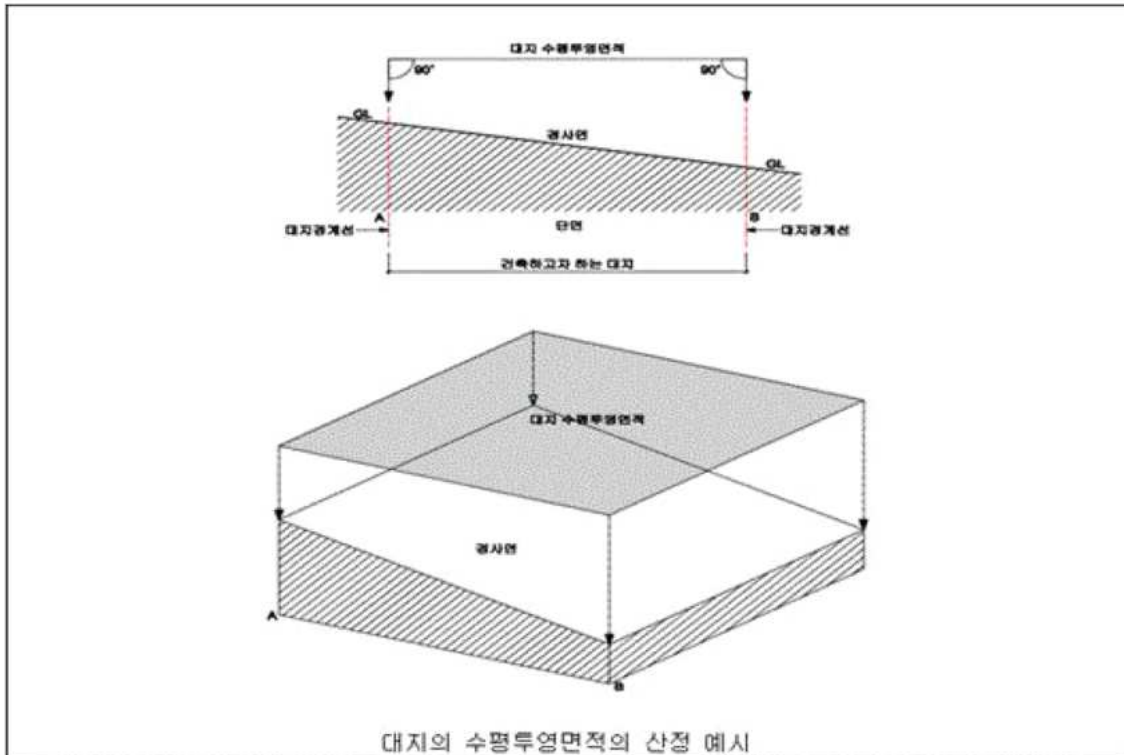
□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의 차이

- 토지면적 : 공간정보관리법(구 지적법) 상 1필지로 구분된 전체토지
- 대지면적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위한 대지 → 건축선의 후퇴부분을 제외하고 건폐율 산정을 위한 유효면적만을 의미

2)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7호)

3) 水平 :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 지구중력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
投影 : 물체가 비치는 그림자 (국어사전)

4) 建築線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건축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따른 소요너비(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도로모퉁이에서는 해당도로의 너비와 도로의 교차각에 따라 정한 선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6m~8m이고, 교차각이 90° 미만인 경우 교차점으로부터 4m를 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된다.



(2) 건축면적

△ 건축법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이하 부분,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m 넘게 돌출된 처마(차양), 1m이하 부분의 옥외계단 면적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건축면적은 대지안에 일정비율의 공지를 확보토록 규정한 건폐율 등에 사용되므로, 건축물의 부분에 해당하더라도 대지안의 공간을 완전히 점유하지 않고 공지확보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 즉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의 낮은 부분과 공간을 크게 점유하지 않는 처마, 차양 등 캔틸레버의 일부 또는 전부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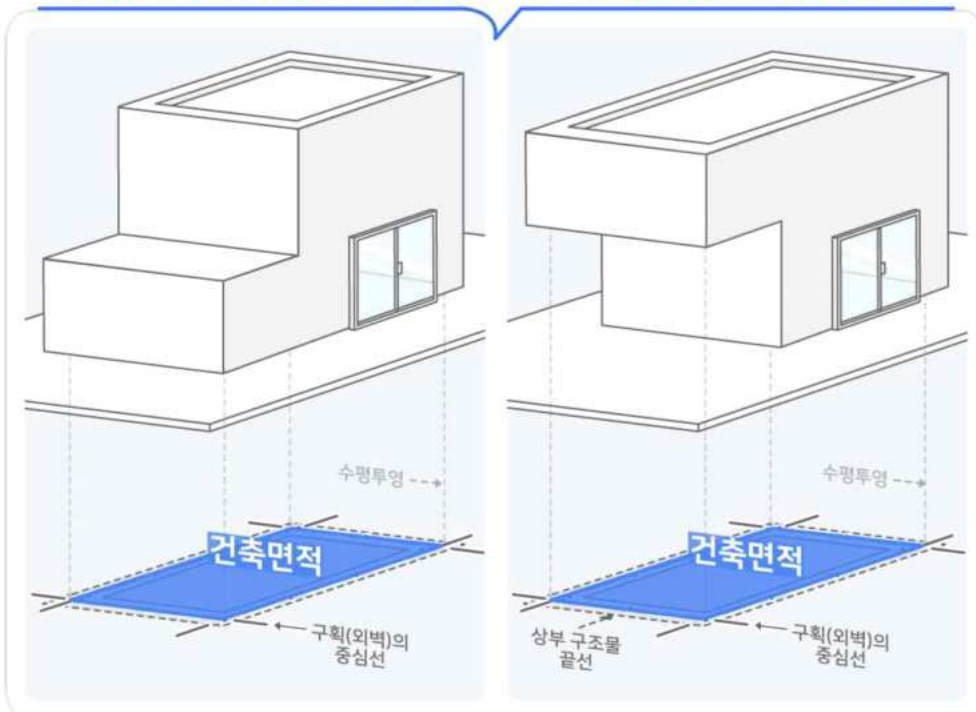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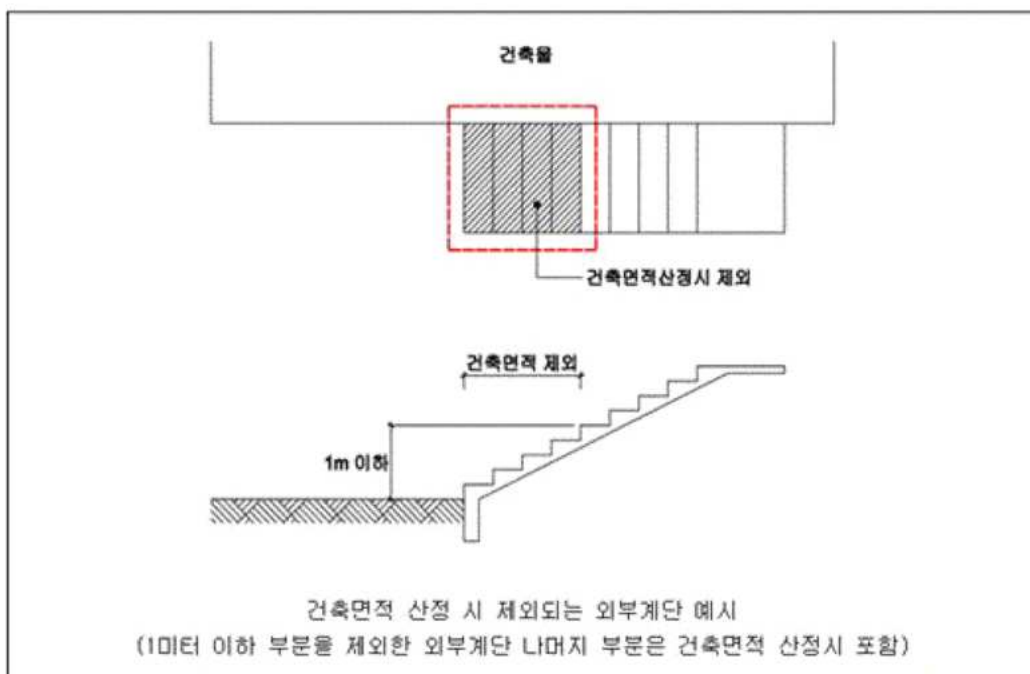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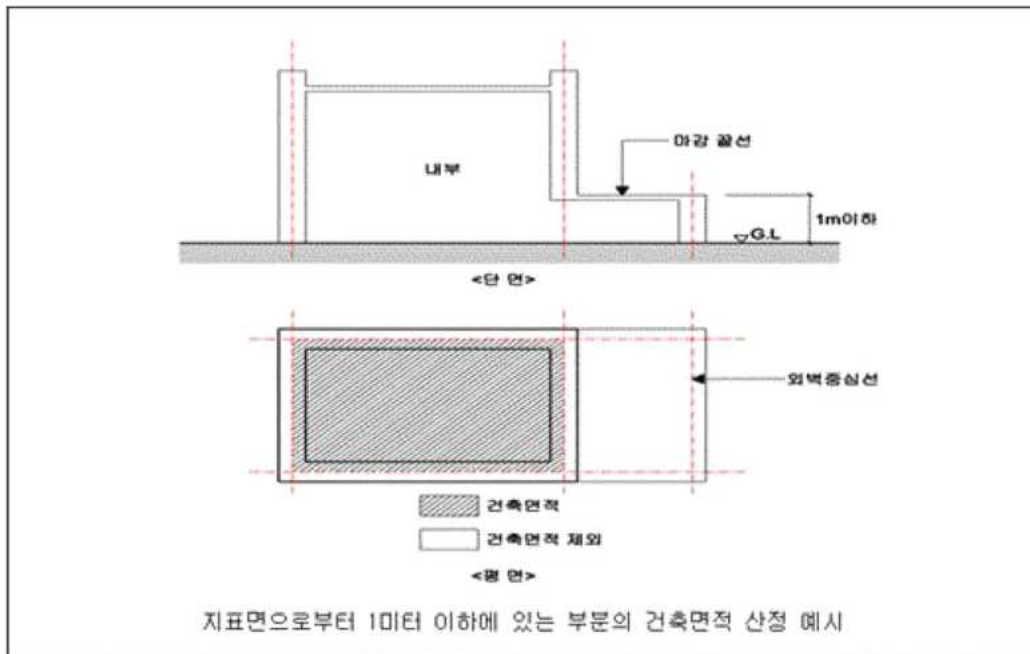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 1m이하 건축물 및 지하층은 제외
- 1m 이하의 외부계단 등
- 처마, 차양, 부연(附緣),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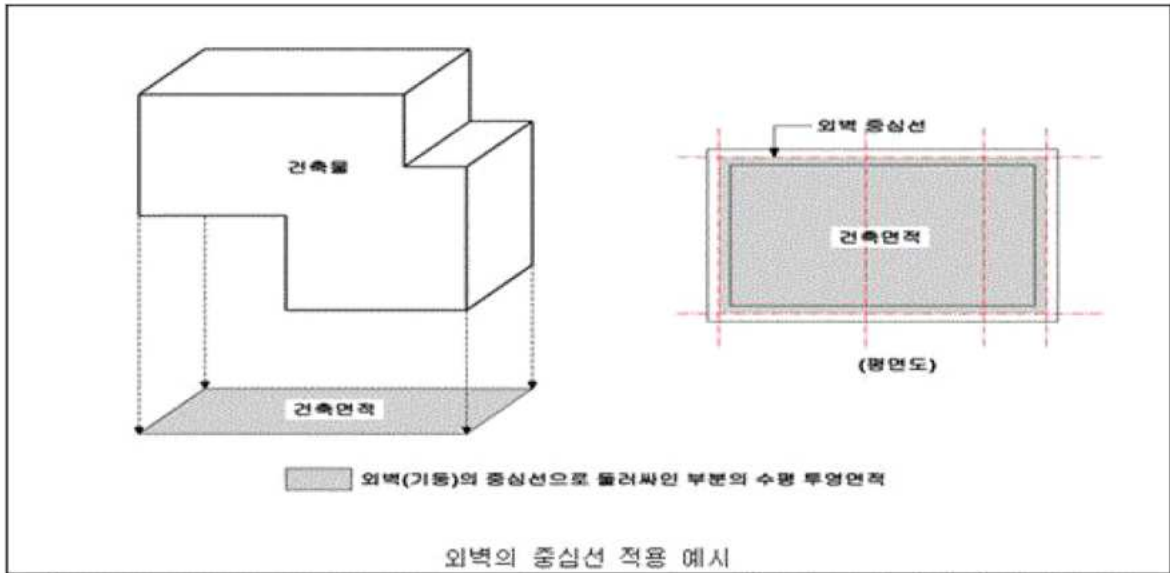


* 본 콘텐츠는 2022년 5월 3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부계단

- 1m 이하 부분 : 건축면적에서 제외
- 1m 나머지 부분 : 건축면적 산정시 포함



(3) 바닥면적

△ 건축법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어느 특정부분) 규모(형태)를 면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각층의 바닥면적, 거실 바닥면적, 욕실 바닥면적 등으로 불린다.

△ 건축물의 형태에 심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즉, 피로티로서 공중의 통행 또는 주차전용 면적, 물탱크, 기름탱크, 공동주택의 기계실, 전기실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바닥면적에서 제외⁵⁾되는 부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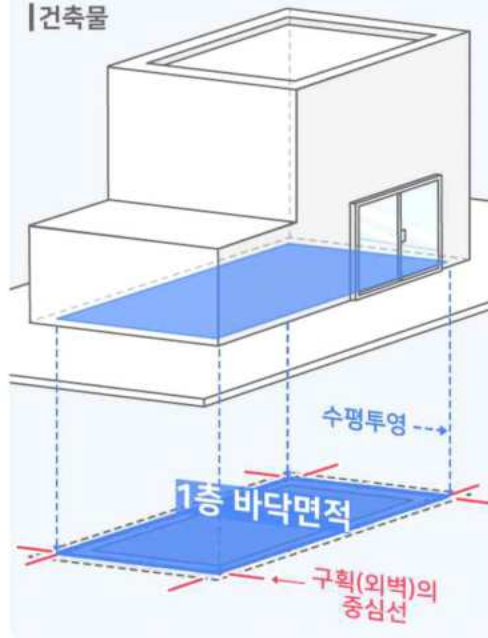
- 필로티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공중의 통행 또는 주차장용)
- 승강기탑, 계단탑, 건축물 내외의 굴뚝,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 전기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생활폐기물 보관함
- 다락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만 해당]

5) 바닥면적 제외의 경우, 용적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고 실질적인 연면적 증가효과가 있다.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



| 1층 평면도



* 본 콘텐츠는 2022년 5월 3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알아두새령!**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
- 용적률 $\left(\frac{\text{연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right)$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됨

『건축법』 제5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1항제4호



바닥면적 산입 제외: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 본 콘텐츠는 2022년 5월 3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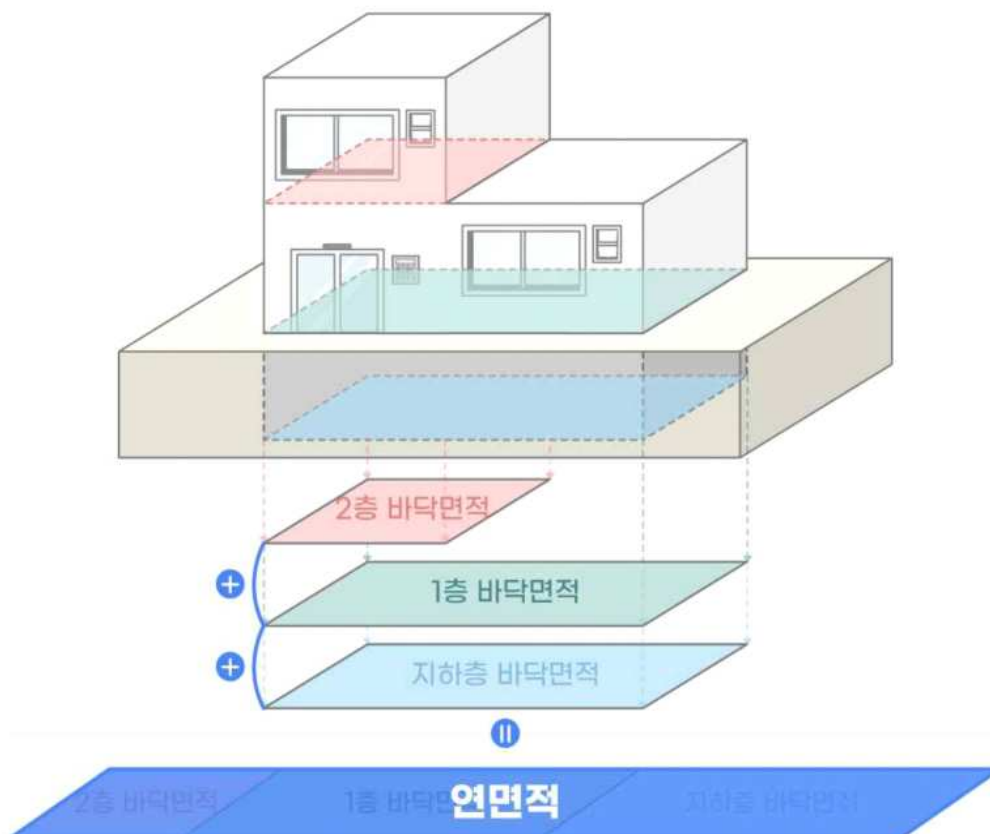
- △ 건축법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지하층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해당건물의 부속용도),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 등

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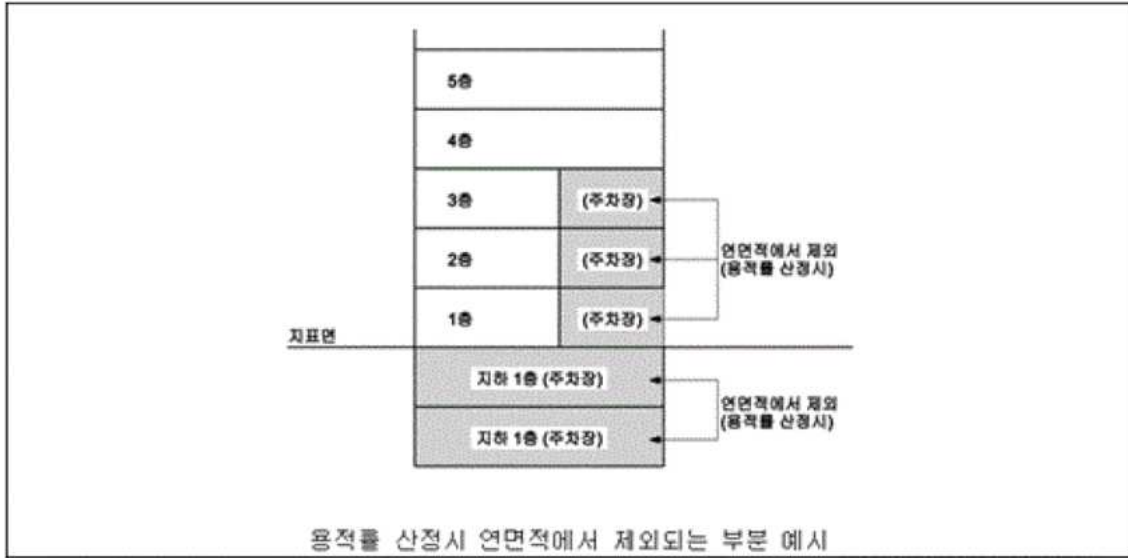
* 본 콘텐츠는 2022년 5월 3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아두새경!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 산정의 경우 지하층의 면적 등은 제외됨
『건축법』 제5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5) 건폐율과 용적율

① 건폐율

- △ 건축법상 건폐율은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할 목적의 평면적 제한규정으로서
- △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건축물이 둘 이상의 경우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 대지면적 대 실제로 건축되는 면적의 비율

$$\text{건폐율}^6) = \frac{\text{건축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 건폐율(平面的의 制限) 목적 : 대지안의 공지⁷⁾ 확보면적
- 일조·채광·통풍 등이 잘되게 하고 화재 등 재해시 인접한 건축물간의 연소방지 및 소화작업, 피난 등 용이, 식물을 위한 공지확보 등 건폐율이 적을 경우(예 30%), 대지안의 공지가 많이 확보되어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클 경우(예 80%) 대지안의 공지가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악화

6) 건폐율의 용도지역별 법정한도는 도시지역은 90%~20%(상업지역 90%, 주거지역 70%, 녹지지역 20%), 관리지역은 20~40%(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20%, 계획관리 40%), 농림지역은 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② 용적율⁸⁾

- △ 건축법상 용적율은 '건축물의 밀도를 통제하기 위한 입체적 제한규정으로서
 △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용적율 산정용)의 비율을 의미한다.

□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건축물이 둘 이상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text{용적율} = \frac{\text{연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 용적율(立體的의 制限) 목적 : 건축물의 밀도를 제한함으로써 시가지 건축물의 무질서한 과밀을 방지
- 건축물 높이의 간접적인 통제기능

IV. 그 간의 유사 해석 사례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의미함

☞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 7) 건축법 제58조는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 8)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법정한도는, 도시지역은 1,500%~100%(상업지역 1,500%, 주거지역 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이고, 관리지역은 100%~80%(보전관리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이며, 농림지역은 8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이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의 14 제1항⁹⁾에 규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

(내무부 세정 13407-993, 1997.8.29.)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든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2⑤(법인의 지방이전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 「건물이 정착된 면적」: 1층 바닥면적

(대법원 2008두11372, 2009.8.20.)

- 이 사건¹⁰⁾은 원고가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라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주택연면적으로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연면적으로 볼 수는 없고 1층바닥면적으로 판결함

- 대상 조항인 조특령 §60-2⑤은 2003.12.30. 삭제되었음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별도합산과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의미함

☞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심 2012서2668, 2013.5.30.)

9) 구 종합토지세의 과세구분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의 산정기준임

10) 2003.12.30. 삭제된 구 조특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즉, 주택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부동산양도차익이 적어지고 부동산양도차익이 적을수록 감면소득이 증가한다.

☞ [법인세과세표준 - 부동산 양도차익(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 제외)] × 이전본사근무인원 연간 급여총액 비율 × 이전본사근무인원 비율 = 감면소득

□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상을 활용하는 경우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 소득세법 제89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이 아닌 수평투영면적 보다 넓은 연면적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정착면적으로 전제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채와 부속사의 연결부분 면적 등은 공부에 기재되지 않아 실체를 갖춘 정착물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착면적으로 볼 수 없음

(조심 2021중2946, 2022.2.22.)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을 의미하므로 구조물인 처마, 현관계단, 식생대 등은 주택정착면적으로 볼 수 없음

(국세청 심사-양도-2023-0038, 2023.8.30.)

□ 주택정착면적 :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5)

☞ 지하층의 포함여부는 불분명함

*기본통칙 :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국세청 훈령, 법령사무처리규정§2)

* 집행기준 : 국세청에서 세법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다양한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실무지침

□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 건물의 연면적(지하층 등은 제외)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축면적) 5배 중 넓은 면적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주거용 건물의 부수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부동산매매사업자로서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 [①,②]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 등 사업소득금액) × 기본세율 + (주택등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주거용건물 부수토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소령 §122 ③)

1. 건물의 연면적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소득세법 제64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은

건물의 연면적(지하층 등은 제외) 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면적을 적용(통칙)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는 지번이 다르더라도 사용현황으로 판단함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서 쟁점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 자 형태의 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점, 건물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의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를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음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2.25.)

□ 공동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연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함 (인용)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9317 판결)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쟁점정리】

- ①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의 기준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함
- ②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기준은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발코니(노대)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은 인용사례

-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274㎡를 초과한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①~③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 250.73~251.14㎡에 이 건 조경면적 1263㎡를 포함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3지0226, 2024.6.27.)

【해설】

(1) 사실관계 및 처분

-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이고, 쟁점①면적은 발코니 상층부(8.5㎡), 쟁점③면적은 발코니 하층부면적 17.1㎡, 쟁점②면적은 지하층에 설치된 물품보관장소로 9.8㎡)인데 쟁점면적들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복층형 고급주택기준 274㎡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으로 종과세되었음

(2)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이유

- 쟁점①,③면적 : 건축법상 발코니(노대) 면적에 해당하여 전용면적에서 제외
중간에 기둥이 설치되어 처음부터 실내공간으로 설계된 경우로서 침실 또는 거실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허가관청이 건축법상 발코니로 사용승인하였고 불법적으로 개조나 증축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발코니에 해당하여 전용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
- 쟁점②면적 : 지하층에 설치된 세대별 물품보관장소는 전용면적에서 제외
건축물대장에 공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하층에 위치하여 사용자들이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규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용면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별 지분면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특정임주자의 전용면적이 될 수 없어 공용면적에 해당함
- 쟁점①,②,③면적은 건축법상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공동주택이므로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를 반영하여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쟁점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외벽의 중심선으로 산정되었으나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외벽은 두세대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바, 어느 한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는 두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을 토대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리】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안목치수)임

V. 조세심판결정

□ [요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의 제3호의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이 아니라 지하면적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석됨

[인용이유] 소득세법령은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택이 정착된 면적”으로 하고 있을 뿐 이를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법령과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소득세법령상 주택이 정착된 면적을 건축법령상 건축면적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령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주택이 정착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면적과 같이 1m이하의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면적은 지상에 드러나 있는 주택건물의 일부분으로 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과세관청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택이 정착된 면적을 공부상 건축면적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연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2021중2946, 2022.2.22.)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 2024소2740, 2024.8.13)

VI. 평석 및 세법손질 ...학설은 찾지 못했음

1.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면적을 차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을 차용하더라도, 대지면적과 토지면적이 다르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이 상이하며, 바닥면적 또한 각층의 바닥면적이 존재하고 통상 1층 바닥면적이 크지만 상위층이 큰 건축물도 적지 않고

각층의 바닥면적이 상이한 것이 현실이며 1층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도 있다.

또한, 건축물은 층수에 관계없이 1棟의 건축물 중 1층 바닥면적만이 지상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5항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1층 바닥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층이상이나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간의 들쭉날쭉 해온 유사해석사례를 정리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한 올바른 결정사례로서 발표자는 이를 지지한다.

2. 아울러, 특히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해석사례를 찾기에 앞서 우선 관련 법령조항을 편향됨이 없이 법문 그대로 해석해보려고 노력한 결과 확신을 가진 다음에 법리에 많이 어긋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례를 인용하기에 앞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만 진정 헌법정신인 국민주권주의(납세자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아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그 조항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문법주의의 한계로 인해 모든 경우의 수를 법률조항에 다 답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큰 줄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해석이 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 물론 해석으로 운영할 것은 해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사례가 하나 나왔다고 하여 매번 법령을 손질하면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하여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각 세법규정 목적이나 규율체계에 따라 건축면적,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등으로 명확하게 입법적 해석으로 다듬어서 유권해석을 하는 공직자는 물론 납세자들 입장에서든 쉽게 수긍이 가도록 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끝.



제1주제 토론문①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윤현준(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토론문

한국지방세연구원 윤현준 전문위원/변호사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주제에 관하여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박종호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과세관청과 법원, 조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번 발제문은 관련 법령, 그 간의 유사해석사례를 정리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관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한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라고 규정하여,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과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명시적으로 타 법령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의 적용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됩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 ①에서는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결정례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해석한 경우도 있지만(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72613 판결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 다르게 해석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심 2024소2740, 2024. 8. 13.).

한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8242 판결 등),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된 부분, 즉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누226 판결).

이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개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동안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사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3. 발제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소2740, 2024. 8. 13.)은 그 간의 일관되지 않았던 유사 해석사례를 정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지하층이 전면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다른 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급경사지로 굴착이 불가능하여 거실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상부를 지상 1층 바닥과 수평으로 돌출시켜 전면 도로와 인접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층 정면(동측) 외벽은 폭 5미터의

전면 도로 지면에서 지상으로 2미터 이상 양측면(서·북측)도 지면에서 지상으로 1.0~1.5m 이상 높이로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상부의 슬래브(지하층 일부)는 쟁점주택 지상 1층 바닥과 동일한 높이이고, 전면도로와 인접하여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이러한 쟁점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제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하여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각 세법의 목적이나 규율체계에 따라 건축면적,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등으로 명확하게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매우 동감합니다. 세법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건축법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차용개념으로 둘 것이 아니라 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주제 토론문②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조창준(현빈세무법인 고문)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조창준

발제자인 박종호 박사님께서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실무와 이론을 모두 섭렵하신 관계로 국세와 지방세의 실무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의 면적산정에 대해 심판례 등을 살펴보고 이 논문을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법상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처분청이나 재결청 또는 대법원에서도 해당 법령 해석이 일관되지 않고 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어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납세자들에게 혼선이 되어 왔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최근 조세심판원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사건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에 있어「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관한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의 개선방안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주택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 건축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세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세심판원 2023지0226(2024.6.27.)의 고급주택에 대한 판단 결정에서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규정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써 그 결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지방세의 세목인 취득세,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취득·소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록 건축법에 발코니 또는 수조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면적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그 면적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발제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심 2024소2740(2024.8.13.)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주택 판정에 있어 1m이하의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 주

택이 정착된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제자께서는 세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을 차용하더라도 대지면적과 토지면적이 다르고, 각층의 바닥면적이 상이한 것이 현실이며 1층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도 있고, 건축물은 층수에 관계 없이 1동의 건축물 중 1층 바닥면적만이 지상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문법주의의 한계로 모든 경우의 수를 법률조항에 다 담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해석이 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고 해석으로 운영할 것은 해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각 세법규정 목적이나 규율체계에 따라 건축면적,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등으로 명확하게 입법적 해석으로 다듬어서 공직자는 물론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쉽게 수긍이 가도록 하자는 발제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발제자님의 개선방안과 같이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건축면적,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등으로 명확한 입법적 해석을 통해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납세자들도 인정하는 공평세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토론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 계좌 불입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진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고찰 및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으로*

김수성** · 유진규***

<요 약>

연금계좌는 근로자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기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동시에 퇴직 시에 수령하는 일시금을 연금으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에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전하게 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세부담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금계좌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퇴직수당을 과세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법 해석의 문제와 IRP 불입에 따른 과세행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에 수령하는 일시금 급여인 퇴직수당의 성격을 고찰해보고 연금계좌에 불입 시 발생하는 과세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수당을 IRP에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일시금 급여에 대하여도 IRP 계좌를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제 혜택은 물론 퇴직수당의 연금화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퇴직수당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은 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사용자 부담의 특성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소득 산정에 대한 새로운 법 해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퇴직 시 연금계좌 불입에 있어서 2002년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도 연금계좌에 불입이 되며, 세전급여로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행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퇴직소득 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고 퇴직수당에 대한 연금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수직역연금 퇴직수당의 IRP 불입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이직이 잦은 유치원 교사 및 간호사 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향후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물론 연금공단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책수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과세이연, 연금계좌, 개인형퇴직연금, IRP, 원천징수, 퇴직소득 정산, 서식변경

* 본 연구는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수당에 대한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IRP 불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것입니다. 본 연구의 주장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주 저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사업실, 세무학박사

*** 공동저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사업실

I.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장수사회의 진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속적인 개혁으로 고부담·저급여의 연금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시금보다는 연금 선택을 유인하는 세제 지원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퇴직 시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과세를 유보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인출 시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들 수 있다.¹⁾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는 크게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노후 보장 체계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한 노후보장 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노후 보장 체계는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한 노후보장 체계는 1~2층 공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²⁾ 3층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은 직역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 가입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1~2층에 대해서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과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하여 노후생활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하여 노후 생활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공무원 등을 비롯한 직역연금 가입자는 2층 연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30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통해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치원 교사 및 간호사 등은 상황이 달라졌다. 빈번한 이직으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2033년부터는 60세에 퇴직하더라도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퇴직 후 5년이라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공백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급여인 퇴직수당을 IRP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그동안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2024년 들어 일부 연금 유튜브(YouTube) 등

1) 본 연구에서는 연금계좌를 과세이연계좌,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여기에서 퇴직연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돈이 없길 바란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며, 2층 연금을 퇴직연금이라고 칭하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1층의 연금을 퇴직연금이라고 칭한다.

에서 IR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도 퇴직수당·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불입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퇴직수당의 연금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과정 속에서 공적연금기관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 상 문제점과 퇴직수당 지급액 중 일부분만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 연금화에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보고 최근에 발생하는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상 이슈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과세방법과 IRP의 제도적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퇴직수당의 법적성격 및 연금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퇴직수당의 과세상 법 해석에 대한 문제점과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과세 행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뒤이어 제4장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과세 및 연금계좌 불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및 현황

1.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장수사회의 진행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의 노후 빈곤이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층의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노후 소득을 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으며 근로를 할 수 있는 젊은 시절부터 퇴직에 이르는 시점까지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실해지고 있다.

모든 공적연금제도의 연금화를 위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 개인연금에 이르기까지 퇴직수당의 통합적 고찰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현행과 같은 제도를 유지 시 결국 공적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에만 의존할 뿐 퇴직수당은 연금화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의 연금 개혁은 모두 공적연금 제도에 있어서 「고부담·저급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단행되었을 뿐 퇴직금과 퇴직수당에 대한 연금화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노후에 중요한 소득 보장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퇴직금에 대한 사외유출, 기금화 방안, 사외적립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지급 금액 수준이 퇴직금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제도적인 유인과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특수직역연금에서도 퇴직수당을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사적연금 운용기관에 적립을 통해 퇴직수당을 연금 수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퇴직수당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퇴직수당의 연금화에 대한 논의가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졌으나,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만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의 비교(김태일 외 1, 2014), 특수직역연금 퇴직수당 제도의 내용(송인보, 2012; 강강원, 2005; 김재경 외 4, 2009; 한성운 외 1, 2008), 과세이연계좌로서의 IRP(미래에셋증권, 2012; 박여영, 2010), 퇴직연금 사업자 활성화 방안(오병국, 2013; 김진수 외1, 2007, 권순원 외 4, 2010; 류건식 외 1, 2003)과 같은 연구가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에 대한 연금화 연구는 일부 연구자로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을 수령 시 연금계좌(IRP 계좌 등)에 의무 이전토록 하고 있다. 이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통한 연금화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여전히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퇴직수당을 IRP 계좌에 의무 이전토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아직까지도 퇴직수당을 연금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퇴직수당의 연금화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퇴직수당에 대한 법적 성격을 고찰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며, 퇴직수당과 관련한 세제 연구가 일부 있었다. 먼저,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강강원(2005)가 있었다.³⁾ 연구 결과로는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을 볼 때 사용자 부담으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반면, 퇴직수당에 대한 세제 연구도 일부 있었다.⁴⁾ 반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도입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⁵⁾ 그리고, 김수성(2015)의 연구에서는 IRP 과세 환급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연구가 있었다.⁶⁾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먼저,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 수령하는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적 성격에 따라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과세체계 정립을 통해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불입함으로써 과세이연이 되고 현금 인출시점에 과세하는 퇴직수당의 연금화 방안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노후 소득 보장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수당의 IRP 불입을 통한 과세이연 및 현금화에 대한 고찰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강강원, 2005,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통권 제19권 제1호 : 65-109,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4) 최원석, 최기호, 김수성, 2019, 사학연금기금 재정안정을 위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123-163

5) 김수성·이세우, 2017,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7권 제2호 pp.185-218.

6) 김수성, 차명기, 2015,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 환급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4권, 1호 263p ~ 304p

2. 퇴직수당제도와 퇴직금제도의 현황

가. 퇴직수당제도의 개요

1991년 10월 1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받게 되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역연금 가입자에게 현행 퇴직연금 이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제도를 신설하였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퇴직급여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1〉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 지급형태⁷⁾와 과세 여부

직역연금 급여의 종류		퇴직소득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소득구분
퇴직급여	퇴직연금(퇴역연금)	×	노령연금	연금소득
	퇴직연금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	-	퇴직소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역연금공제일시금)	○	-	
	퇴직일시금	○	반환일시금	
퇴직수당		○	-	

주 : ()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임.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서는 각종 급여를 언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애급여 그리고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언급하고 있다.

7)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급여에 한정하여 기술하였음. 유족급여 등 비과세 항목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제외하였음.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 ①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재직기간} \times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퇴직수당)

- ②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아래 <표 2>는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 2>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비교

구분	퇴직금	퇴직수당
소득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⁸⁾
근속월수	계속근로기간	연금법 상 재직기간 (최대 33년)
근속월수 제외	일반 휴직기간 등 (전부 제외, 단체협약 참조)	일반 휴직기간 등 ⁹⁾ (1/2 제외, 공무원연금법 등 참조)
지급률	100%	6.5 ~ 39% ¹⁰⁾

나. 퇴직수당 비용 부담 이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사립

8)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사학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하 생략)

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퇴직수당)에 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이전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2010년 이후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009년 이전	10%	35%	45%	50%	60%
2010년 이후	6.5%	22.75%	29.25%	32.5%	39%

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재원은 국가·학교경영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일정액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과 유사하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에서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6조(국가부담금)¹¹⁾, 제47조(법인부담금)¹²⁾,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¹³⁾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퇴직수당 비용부담 요약

- | |
|--|
| A.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퇴직수당 지급비용 외의 퇴직수당 지급비용 |
| → 학교경영기관 40% 부담 |
| B.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 등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
| → 학교경영기관 전액 부담 |
| C.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 지급비용으로 부담한 금액 |
| → 236억원 |
| D. 학교경영기관과 연금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 |
| → 국가 부담 |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6조 (국가부담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학교경영기관과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부담하고 있다.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법인부담금) 제1항 제4호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토록 하며,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사학연금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퇴직수당의 연금계좌 불입 현황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이 불가능하였으나 2017년 4월 18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참고로, IRP 가입 대상은 다음 <표 4>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기업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¹⁴⁾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로 정하고 있다.

<표 4> IRP 가입 대상

구분	가입 대상자	
1. 퇴직연금 도입기업	퇴직근로자	기존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납부희망자	퇴직금제도에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2.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4.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5.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나.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의 퇴직수당 연금계좌 불입 관심 증대

지속적인 연금 개혁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연금 지급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최근에는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 이후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고 퇴직연금 지급액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퇴직 이후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지급액 또한 과거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대처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불입한 후 퇴직수당을 연금화 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퇴직자의 IRP 이전 건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제2항 제3호에 의거 2017년 7월 26일부터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 경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연금계좌로 과세이연한 건수는 총 2,566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5월부터 2015년 말까지 과세이연계좌에 불입된 건수는 732건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15건이었으며, 2020년도에는 74건, 2021년 113건, 2022년 138건, 2023년 387건에 비하여 2024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1,007건으로 2024년 들어 전년도에 비해 30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공무원연금 퇴직자 중 IRP 이전 건수

연도	2010년 이전	2011 -2015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건수	0	732	115	74	113	138	387	1,007	2,566

주 : 공무원연금공단(2024) 내부자료 참조

반면, 사학연금 퇴직자의 IRP 이전 건수는 아래 〈표 6〉과 같다. 최근 사학연금 가입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금계좌 이전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연금계좌로 과세이연한 건수는 총 539건이다. 반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IRP에 이전된 건수는 145건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32건이었으며, 2021년도부터 2024년 10월 말일까지의 총 건수는 354건이다. 표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최근 5년 간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8건, 2021년 21건, 2022년 43건, 2023년 77건에 비하여 2024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221건으로 2024년 들어 300%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사학연금 퇴직자 중 IRP 이전 건수

연도	2010년 이전	2011 -2015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건수	0	145	24	8	21	43	77	221	539

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24) 내부자료 참조

Ⅲ.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 및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문제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사용자 부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연금법상 지급하는 일시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퇴직소득 과세에 있어서 법 해석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령한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이전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금계좌가 과거에 비해 급성장을 하였지만, 퇴직수당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의 문제, 이전 금액의 제한, 세후 급여 지급의 문제, 정산의 문제, 복잡한 과세 행정의 업무 발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가입자 및 연금공단과 퇴직연금 취급기관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퇴직수당의 과세상 법 해석의 문제점

가. 현행 법령 검토

현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6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서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6가지로 열거하고 있었으나,¹⁵⁾ 현재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¹⁶⁾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15)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16)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명시한 ‘사용자부담을 기초로 하는’ 급여로 퇴직수당은 양쪽에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인지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인지가 문제가 된다.

나. 비용부담 구조를 고려한 퇴직수당의 성격 분석

해당 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퇴직수당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퇴직수당이 사용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일반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 사용자인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지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에 대한 재원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가·학교경영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일정액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재원 조성을 위해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재원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부터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¹⁷⁾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부터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퇴직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의 주체를 사용자(학교경영기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퇴직수당의 연도별 부담금 관련 자료 현황인 다음 <표 7>을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
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7)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기여금으로 칭하고 있다.

〈표 7〉 연도별 퇴직수당 부담금 관련 자료

(단위 : 백만원, %)

연도	법인		국가		사학연금공단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2019	121,360	19.15	488,702	77.12	23,630	3.73	633,692
2020	136,161	20.11	517,212	76.40	23,630	3.49	677,003
2021	140,152	21.07	501,531	75.38	23,630	3.55	665,313
2022	160,234	21.76	552,498	75.03	23,630	3.21	736,363
2023	172,264	22.40	572,985	74.52	23,630	3.07	768,880

출처 : 2024 사학연금 통계연보

위 표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경영기관의 퇴직수당 부담률은 20%대에 불과하며 국가에서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이상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퇴직수당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가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지급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학교경영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을 일종의 국가의 대리인 자격으로써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는 광의의 사용자 또는 학교경영기관과 공동사용자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¹⁸⁾ 따라서 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구조를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연금

18) 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박현희, 2018)

법에 의한 퇴직수당 비용부담 구조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비용 부담 구조에 차이가 있다. 즉, 퇴직수당이 개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사용자 위치에 있으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학교경영기관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 위치에서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점¹⁹⁾ 등을 고려할 때 퇴직수당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득 구분에 따른 실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인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인지에 따라 퇴직소득 산정에 있어서 과세대상 금액이나 근속연수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 볼 경우

퇴직수당을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²⁰⁾ 아울러 근속연수공제액 산정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2항 조항에 따라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소득세법 상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²¹⁾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215호 2014.2.27.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사립학교교직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학교법인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학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100분의 40을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및 학교법인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등의 해산 등으로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20)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바54의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은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법체계를 지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나,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 볼 수 있다.

21)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 볼 경우

퇴직수당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볼 경우 퇴직수당 지급액 전액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속연수공제액 산정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소득세법 상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 이는 연금법상 재직기간의 상한(33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²⁾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구분해 보면 다음 <표 8>과 같이 퇴직수당의 성격에 따라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표 8> 퇴직수당의 성격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방법

구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소득
과세대상소득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일부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전액 과세)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입사일 ~ 퇴직일)

라. 퇴직수당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 볼 경우**(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해석상 문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퇴직급여가 반납의 대상이 될 뿐 퇴직수당은 반납의 대상이 아니다.²³⁾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고려했을 때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는 퇴직수당이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 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22)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23) 공무원과 사학교직원은 재직기간합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령, 공무원에서 10년 근무하고 퇴직을 하여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사학에 다시 10년을 더 근무하게 된다면 재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때는 공무원에서 받은 급여를 사학연금에 반납하게 된다. 그러나 퇴직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1항 해석상 문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 제1호에는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대상금액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동 조항 제2호에는 제1호 외의 일시금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될 경우 동 조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수당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월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퇴직수당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납입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국가·학교경영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일정액을 분담하여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금 납입월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퇴직수당이 아니라 퇴직급여로 한정해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는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 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times (\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text{총 기여금 납입월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2항 제2호 해석상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에 대한 현행 근속연수 산정 규정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가) 근속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합산 및 일반휴직 관련 재직기간 제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근속연수를 파악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근속연수가 근속연수공제액과 환산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근속연수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 지급일의 다음 날까지로 볼 수 있으나 일반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²⁴⁾ 하지만,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경우 별도의 특례 조항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²⁵⁾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엄격해석의 원칙²⁶⁾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 시에도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 산정에 고려되는 재직기간을 퇴직수당 관련 근속연수로 산정한다면 원천징수세액 산정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다. 퇴직수당 지급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과 퇴직급여 지급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기간 합산제도 등을 활용할 경우 퇴직급여 산정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은 늘어나지만 퇴직수당 산정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²⁷⁾ 또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등을 제외한 일반휴직 기간 등이 존재할 경우 퇴직수당 산정 시 제외되지만 퇴직급여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²⁸⁾

따라서, 퇴직수당 지급 시 합리적인 원천징수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적용

24)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에서는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6)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27) 18.03.01. ~ 20.02.29. 기간과 22.03.01. ~ 24.02.29. 기간 재직 시, 해당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4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학연금법 제32조 - 재직기간의 합산)

28) 22.03.01. ~ 24.02.29. 재직 중 23.03.01. ~ 24.02.29 휴직 시, 퇴직수당 산정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에서 6개월 (12/2)을 제외한다. 하지만 퇴직급여 산정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된다.

해야 한다. 그러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조세법의 대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퇴직수당을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 등을 통하여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일시금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²⁹⁾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일시금을 함께 지급 받았을 때, 퇴직급여 산정에 고려되는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산정에 고려되는 재직기간이 각각 다를 경우 공단에서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예시 사례】

퇴직급여 : 50,000,000원 (근속월수 24개월, 재직기간 합산 가산월수 24개월)

퇴직수당 : 10,000,000원 (근속월수 24개월, 일반휴직 제외월수 12개월)

위 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총 퇴직소득은 6천만원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6천만원에 대한 퇴직소득 산출 시 근속연수 산정과 관련된 부분을 들 수 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에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퇴직수당을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볼 경우,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에 대해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재직기간 상한 관련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퇴직수당 산정 시

29)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함께 지급받을 수도 있고, 퇴직수당을 먼저 지급받고 그 이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고려되는 재직기간은 최대 33년이다.³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는 퇴직수당 산정에 고려되는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할 시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은 최대 33년까지라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근속연수를 최대 33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퇴직수당 산정 시 고려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40년 근무를 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퇴직수당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퇴직수당 산정에 고려되는 변수들이 33년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³¹⁾

이외에도 재직기간 33년 상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다. 학교기관에서 39년 근무 후 1년 먼저 명예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외에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39년을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³²⁾ 그렇지만, 학교기관에서 40년 근무 후 정년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대 33년까지만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더 오래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속연수공제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의 의미를 최대 33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퇴직수당을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해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2항 제3호 해석상 문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를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학교기관 등으로부터 명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때 근속연수는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

30) 퇴직급여 경우 법령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36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31) 이때에는 33년의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기준소득월액이 퇴직수당에 반영된다.

32) 학교경영기관에서 39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후 연금공단에 퇴직수당을 청구한다면 학교경영기관의 근속연수인 39년에 대한 468 개월과 퇴직수당 근속연수로 정하고 있는 33년에 대한 396개월 수의 합에서 중복월수 33년에 대한 396개월을 차감한 후의 월수를 근속연수로 보도록 하고 있다. 즉, 468개월+396개월-396개월은 468개월로 39년에 대한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산정한다.

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함께 지급받는 경우”의 의미

사립학교 교직원이 학교기관 등으로부터 명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등을 별도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해당 교직원이 명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만 해당 교직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공단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공단에서 해당 교직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퇴직소득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해당 교직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는 교직원 입장에서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를 검토해 봤을 때 해당 조항은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된 법령으로 판단되며, 입법 보완을 통해 해당 교직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퇴직소득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공단에서 인지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실제 재직기간”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의 의미와 “실제 재직기간”의 의미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실제 재직기간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퇴직급여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 참고 할만한 예규는 다음과 같다.

기재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원천46013-202, 2002.07.09

【요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임

이상의 예규를 살펴보면 실제 재직기간은 퇴직소득 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퇴직소득 산정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학교기관 및 퇴직연금 취급기관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재직기간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해당 교직원들의 실제 재직기간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³⁾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이해를 위해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2016년 이후 국립대학병원 교직원들의 경우 국민연금법 적용 대상자에서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국립대학병원 교직원들의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등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2016년 사학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2016년 이전에 국립대학병원 교직원으로 임용된 교직원

33) 통상 학교기관에서 명퇴금을 먼저 받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한 후 퇴직수당과 합산하여 퇴직소득 정산을 하게 된다.

들이 언제 입사했는지, 휴직이 있었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재직기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립대학병원 교직원의 경우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법령 개정, 정규직 전환 등의 이유로 입사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설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학교기관을 통하여 실제 재직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될 때 마다 해당 교직원의 실제재직기간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도 없다고 할 수 있다.³⁴⁾ 또한 입사 당시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사용자가 아닌 공단에서 해당 교직원의 실제재직기간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교직원의 사용자가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제재직기간을 고려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규정과 충돌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재직하였던 기관으로부터 명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등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³⁵⁾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³⁶⁾ 근속연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동일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34) 대법원 2017두48543 판례 일부 발췌, ... 지급은행인 원고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원천징수에 필요한 어음할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발행기업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할인 여부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어음이 지급제시될 때마다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도 없다. ...

3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정산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고, 정산근속연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해야 하나, 제외월수·가산월수 등이 존재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외월수·가산월수가 어떠한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사용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 상으로는 제외월수·가산월수에 관한 개월수를 기재하는 항목만 존재할뿐, 해당 제외월수·가산월수가 어떠한 기간 동안 발생된 것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만으로는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근속연수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6)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제외월수·가산월수가 어떠한 기간 동안 발생된 것인지 표기되도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변경하더라도 학교기관 등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이 2개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법령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원천납세의무자도 부정확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위험이 존재한다.³⁷⁾ 따라서, 입법 보완을 통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충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마. 퇴직수당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으로 볼 경우

(1)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해석상 문제점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조문 후단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문구를 고려하면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금액에 한해서 과세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퇴직수당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수당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볼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퇴직수당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 볼 경우 현행 법령상 퇴직수당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해당 조항도 입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2항 제3호 해석상 문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를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학교기관 등으로부터 명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에 대해 미숙하거나 또는 고의로 허위 작성한 경우 정산근속연수가 잘못 산정될 위험이 있다. 공단에서 제출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완전한 정보만으로 퇴직소득세액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교직원의 사용자가 아닌 공단에서 퇴직소득세액 정산 업무 수행 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7) 먼저 선행기관에서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재직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후행기관에서 지급한 퇴직수당과의 퇴직소득 정산은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규정과 충돌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은 명확하게 퇴직급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사전에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현행 법 조문 상 퇴직급여·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하고, 퇴직급여·퇴직수당을 각각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급여·퇴직수당은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각각 지급될 수도 있고 함께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직원이 퇴직급여·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았는지, 각각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공단으로부터 각각 지급받는다라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다.³⁸⁾ 퇴직수당에 대해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 및 법령해석 등이 필요하다.

(나) 퇴직급여·퇴직수당·학교기관 등의 명예퇴직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보고, 퇴직수당 및 학교기관 등의 퇴직금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항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38)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때 퇴직일시금은 35년이며, 퇴직수당은 33년일 경우 이때에는 근속연수를 35년으로 하나, 퇴직수당만을 별도로 신청하면 33년의 근속연수가 적용된다.

2. 퇴직수당 연금계좌 불입 관련 문제점

가. 특수직역연금 연금계좌 활용 미비

연도별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일시금 선택 비율을 살펴보면 연금 선택 비율은 88.1%에 그치고 있다. 2018년도에 90% 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88.1%로 하락하였다. 참고로, 사학연금 급여의 연도별 자료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연도별 사학연금 급여 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324	21,008	823	67,273	22,468	182,500	30,646	608,033
2019	297	19,997	928	76,568	23,866	195,690	31,222	642,691
2020	275	19,041	841	70,768	22,149	195,073	30,014	690,043
2021	243	16,218	838	68,107	19,914	196,767	27,994	675,376
2022	287	17,986	1,131	93,736	24,129	242,207	31,613	747,669
2023	312	21,032	1,275	114,385	24,326	264,000	32,608	780,332

출처 : 2024 사학연금 통계연보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 기준으로 한해 동안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 총 건수는 58,521건이며, 총 지급액은 1조 4,58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312건으로 21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은 1,275건으로 1,144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퇴직일시금은 총 24,326건으로 지급액은 2,640억원이다. 반면, 퇴직수당은 32,608건으로 총 지급금액은 7,803억원이다. 이 표로 볼 수 있는 것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퇴직수당 수령자 중에서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0.24%(=77건/32,608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활성화 정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퇴직수당 2002년도 이전분 IRP 불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점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부터 공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2002년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

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수령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전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2002년 이후 불입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하고 퇴직수당으로 9천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퇴직을 가정할 경우 2002년 이후 재직기간인 22년에 대한 기여금 불입에 대응하는 약 6천만 원은 퇴직소득 과세가 되고, 그 이전인 11년 정도의 기여분 3천만 원은 비과세 재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자. 이때 퇴직수당 중 연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002년 이후 분에 해당되는 6천만원만 연금계좌에 불입이 가능하다.

다. 과세이연 시 퇴직소득 정산에 대한 문제점

교직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학교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학교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때 퇴직소득 정산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아래 <표 10>을 참조하고자 한다.

<표 10> 과세이연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관련 사례

(단위 : 원)

구분	퇴직수당지급	명예퇴직금 지급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정산
과세소득	52,846,470	56,773,320	109,619,790
근속연수공제액	40,000,000	56,773,320	76,000,000
환산급여	7,707,882	-	12,607,421
환산급여공제	7,707,882	-	10,764,452
퇴직소득과세표준	-	-	1,842,969
산출세액	-	-	294,874
기납부세액	-	-	-
신고대상세액	-	-	294,874

교직원이 퇴직 후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 공단에서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 경우와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계좌 취급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

좌취급기관에 제출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신고대상세액은 각각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효과가 없다. 공단에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액 정산을 한 경우, 공단에서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신고대상세액은 294,874원이다. 해당 신고대상세액은 퇴직금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분할 수령할 시 3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³⁹⁾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당 교직원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감면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라. 특수직역연금 공단의 복잡한 과세행정 업무 발생

저출산·고령화 기초하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하락됨에 따라 최근 공단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불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에서 현재 연금계좌로 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이 퇴직수당을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잡한 세무행정 절차를 거쳐서 다시 연금계좌로 퇴직수당을 직접 불입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공단에서 퇴직수당을 해당 교직원의 연금계좌로 바로 지급할 수 있다면 교직원, 금융기관, 공단 등 해당 세무행정 업무 당사자들에게 있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금계좌의 직접 불입은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정책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법령 조항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교직원의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다.⁴¹⁾

위 법령에 따라 공단에서는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예금계좌의 범위 안에 연금계좌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에 대한 운용 및 퇴직소득세 환급 관련 세무행정 업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9) 10년을 초과하여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40%로 감면된다.

40) 일단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에 납부한 후 교직원이 공단에 IRP에 불입하고자 하면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미리 IRP 계좌에 이전한다. 그 이후 불입한 금액을 공단에서는 과세관청에 환급 신청하거나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4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① 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IV. 퇴직수당 과세 및 IRP 불입 개선방안

1. 퇴직수당 법령 해석 정비

가. 퇴직수당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볼 경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관련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경우 반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퇴직수당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 다음 <표 11>은 소득세법 제40조에 대한 개선안을 표시한 것이다.

<표 11> 소득세법 제40조의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② 법 제22조 제1항 1호에 따른 일시금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제임용일 또는 재가입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② 법 제22조 제1항 1호에 따른 일시금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하며,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제외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제임용일 또는 재가입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은 반환일시금과 그 외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경우 기여금 납입월수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방법을 새로이 신설한다. 다음 <표 12>는 소득세법 제42조의2에 대한 개정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표 12> 소득세법 제42조의2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

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생략>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tr><td style="width: 30%;">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td><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td style="width: 60%;">과세기간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기여금 납입월수</td></tr></table> <추 가>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간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기여금 납입월수	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생략>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tr><td style="width: 30%;">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td><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td style="width: 60%;">과세기간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기여금 납입월수</td></tr></table> 3. <u>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tr><td style="width: 30%;">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td><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td style="width: 60%;">과세기간준일 이후 실제제직기간 실제제직기간</td></tr></table>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간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기여금 납입월수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간준일 이후 실제제직기간 실제제직기간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간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기여금 납입월수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간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기여금 납입월수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간준일 이후 실제제직기간 실제제직기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은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퇴직수당 산정에 고려되는 재직기간과 퇴직급여 산정에 고려되는 재직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 시에도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② 직역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급여에 대한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이 함께 지급될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 ③ 연금법상 퇴직수당 산정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은 33년이 상한이지만, 퇴직수당 산정 시 고려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이다. 따라서 33년 이후의 기준소득월액도 퇴직수당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다.
- ④ 정년퇴직하여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만 있는 경우 최대 33년까지만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하여 명예퇴직금 등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3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 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는 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단에서 해당

교직원의 실제제직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교직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경영기관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공단에서는 해당 교직원의 실제제직기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⑥ 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학교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퇴직금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규정도 적용된다. 동일한 상황에서 근속연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 2개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법령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⑦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당초 입법취지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표 13>과 같이 소득세법 제105조에 대한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표 13> 소득세법 제105조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105조 【근속연수】 ① 생략 ②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제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생략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제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	제105조 【근속연수】 ① 생략 ②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제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생략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u>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제직기간(연금법상 제직기간 상한을 고려하지 않는다)</u> 3. <u>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제직기간(연금법상 제직기간 상한을 고려하지 않는다)</u>

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 제2항에 따라 <u>퇴직급여를 반납하고</u>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u>퇴직급여의 경우</u> 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나. 퇴직수당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으로 볼 경우

(1)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수당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으로 볼 경우 퇴직수당 지급액 전액에 대해 과세대상소득으로 봐야 하나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후단에 기술되어 있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퇴직수당 지급액도 2002년 1월 1일 이후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해당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 <표 14>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대한 개정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표 14>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추가>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 중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학교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퇴직금도 지급받는 경

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 규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규정도 적용된다. 동일한 상황에서 근속연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 2개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법령에 따라 근속연수를 산정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표 14>와 같이 소득세법 제105조에 대한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표 14> 소득세법 제40조의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105조 【근속연수】 ① 생략 ②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생략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생략	제105조 【근속연수】 ① 생략 ②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생략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u>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연금법상 재직기간 상한을 고려하지 않는다)</u> 3. 삭제 3 생략

2. 퇴직수당 연금계좌 불입과 관련한 개선방안

가. 연금계좌 납입액 확대 방안

최근 교직원들은 수령한 퇴직수당 전체 금액에 대하여 IRP 계좌에 불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공단에서 발급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해당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식별한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한하여 연금계좌에 납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때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실제 퇴직수당 금액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일반계좌에 불입 후 연금계좌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받은 퇴직수당이 1억 원이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퇴직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에 납입이 가능하다. 최근 연금공단에서 지급받은 퇴직수당 금액 전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교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퇴직수당 연금계좌 납입 가능액을 증액시키고자 한다. 과세이연은 2002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여 2002년 이전분에 대하여도 IRP에 불입가능한 방법을 2가지 방안으로 제시하고 한다.

(1) 과세제외 퇴직급여를 비과세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방법

2002년 이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비과세 퇴직급여가 아니라 과세제외 퇴직급여에 해당된다. 현행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과세제외 퇴직급여를 기재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과세제외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과세제외 퇴직급여를 비과세 퇴직급여로 전환할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02년 이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을 표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학교기관에서 명예퇴직금 6천만원을 수령하고 연금공단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하자. 연금공단에서 지급한 1억원 중에서 1/2은 2002년도 이전에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과세 제외된다고 가정해 보자. 과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2002년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인 5천만원 만 기재되어 IRP 연금계좌에 이전할 수 있는 금액도 동 금액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서식 기입 방법을 변경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02년도 이전 분도 기재를 하여 2002년도 이전분에 대한 퇴직수당·퇴직급여에 대해서도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참고로, 과세제외 퇴직급여를 비과세 퇴직급여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2002년 이전 과세 제외금액 포함하는 방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징수 의무 자	①사업자등록번호		116-82-01445	②법인명	③대표자
	④법인(주민)등록번호		111271-0001259	⑤소재지	나주시 빗가람동
소득 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9) 임원여부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부
귀속연도		2024-01-01부터	(12) 퇴직사유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2024-02-29까지		[]임원퇴직 []중간정산	
퇴직 의무 자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13) 근무처명		○○고등학교	사학연금공단	
	(14) 사업자등록번호		305-82-01287	116-82-01445	
	(15) 퇴직급여		60,000,000	100,000,000	160,0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과세제외금액 포함)		-	50,000,000	50,000,000
	(17) 과세대상퇴직급여(15-16)		60,000,000	50,000,000	110,000,000

(2) 비과세퇴직급여와 2002년분 과세제외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방법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개선하여 과세제외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간단히 양식을 개선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교기관에서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을 각각 6천만원과 1억원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하자. 연금공단에서 지급한 1억원 중에서 반액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별도로 란을 만들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기재하고 동 금액을 과세분과 비과세분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방법으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림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개정하는 방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징수 의무 자	①사업자등록번호		116-82-01445	②법인명	③대표자	
	④법인(주민)등록번호		111271-0001259	⑤소재지	나주시 빗가람동	
소득 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9) 임원여부	부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11) 2011.12.31.퇴직금		
귀 속 연 도		2024-01-01부터		(12) 퇴직사유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2024-02-29까지			[]임원퇴직 []중간정산	
퇴 직 의 무 자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13) 근무처명		○○고등학교	사학연금공단		
	(14) 사업자등록번호		305-82-01287	116-82-01445		
	(15) 퇴직급여		60,000,000	100,000,000	160,000,000	
	(16-1) 비과세 퇴직급여		-	-	-	
	(16-2) 2002년 이전분 퇴직급여			50,000,000	50,000,000	
	(17) 과세대상퇴직급여(15-16)		60,000,000	50,000,000	110,000,000	

IRP에 불입한 이후 현금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2002년도 이전 분과 이후 분 및 명예퇴직수당 전체 불입액 중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총 불입한 금액은 1억 6천만 원인데 불입 당시 과세이연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1백만원으로 가정해보자. 만약 총 1억 6천만원 불입액을 10년 동안 균등하게 연금 형태로 인출한다고 하면 매년 1천 6백만원을 인출하게 된다. 이때 과세되는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자 한다. $1,000,000 \times \left[(16,000,000 / 160,000,000) \times (1 - 30\%) \right] = 70,000$ 원으로 산출된다. 전체 1백만원에 해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전체 불입금액 1억 6천만원 중에서 인출한 1천 6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한 후 30% 감면받은 7만원을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나. 연금계좌 불입과 정산 방법 개선 방안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공무원연금 퇴직자들과 사학연금 퇴직자들은 대부분 지급받은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불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퇴직수당의 연금화에 대한 유인을 처음부터 좌절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 생활 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방안 또는 세금 납부와 불필요한 환급의 과세행정을 피할 수 있는 사전결정제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퇴직수당 등 전액 의무 이전 방안

정부는 2022년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RP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IRP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다.⁴³⁾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 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22년

42) 급여계좌에 잔고가 많으면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금계좌에 잔고가 쌓이면 이를 연금으로 인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수있다

43)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수당이 노후 자금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완전한 3층 연금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퇴직수당 등 일시금 급여에 대하여 일반 민간 근로자가 IRP에 의무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은퇴 이전에 IRP 추가 불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은퇴 시점에서는 퇴직수당 등을 IRP에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전할 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어 퇴직수당의 연금화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전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IRP에 의무 이전함으로써 2층의 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여 전체 가입자 중에서 대략 10%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직이 잦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 계층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는 소득 공백기에 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OECD 노후 빈곤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의무적으로 연금계좌에 이전토록 할 필요가 있다.⁴⁴⁾ 별도의 IRP 계좌를 마련하여 퇴직수당이 연금계좌에 지속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IRP 계좌에 불입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IRP 불입 여부 사전 결정제 도입 방안

IRP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여부를 퇴직 전에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IRP에 실질적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 퇴직급여 중에서 IRP에 이체된 금액에 대한 환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퇴직급여 지급 시 IRP 가입자를 미리 파악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44)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수당 금액을 이전한 후 불가피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연금계좌 이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다.

이를 위해 퇴직 IRP의 불입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퇴직 예정자는 퇴직하기 전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후에 연금공단에 퇴직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일반계좌에 입금을 한 후에 60일 이내에 IRP에 불입하는 절차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일반계좌로 받고 IRP 이전에 따른 환급과 불입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사전에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연금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되, IRP 계좌로 불입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세전 급여로 퇴직수당 전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DB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 지급일 전까지 과세이연명세서에 이체가 가능한 금액을 기입하여 과세금액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의 개선은 더 이상의 세금 신고 및 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부담 환급에 따른 세무행정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소득 산출 시에 미리 퇴직시점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을 파악하고, 이러한 금액 중에서 ‘이연 가능한 퇴직급여액’을 파악하여 이 금액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그림 3>은 연금 계좌 불입 및 과세 절차를 개선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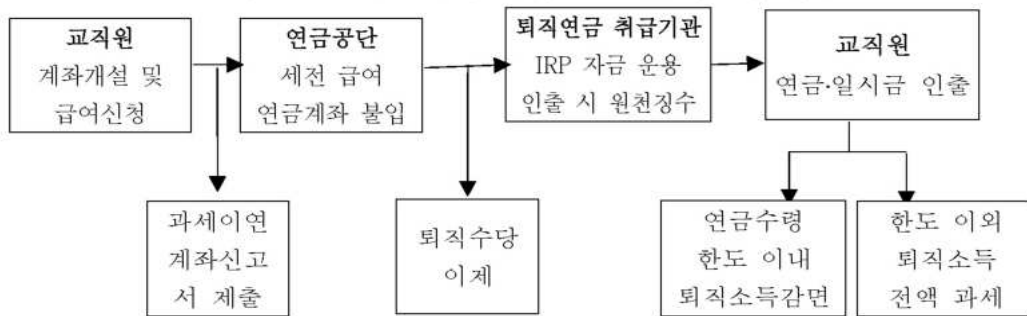
<그림 3> 퇴직 IRP 불입 및 과세 절차 개선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직원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퇴직 IRP 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IRP는 일부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고자 매년 일정액을 불입했던 기존 IRP 계좌에 추가로 불입해서는 않된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하여는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가 되는 반면,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퇴직 IRP 연금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연금공단에서는 세전 급여로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유보하고 연금계좌에 전액 이체하여 준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 퇴직연금 취급기관에서는 불입된 금액을 교직원의 니즈에 맞게 운용한다. 적립된 금액을 교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기존에 과세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연금을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고,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존에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을 퇴직연금 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절차로 개선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4>는 연금공단과 퇴직연금 취급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림 4> 연금공단과 퇴직연금 취급기관의 역할



두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이연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が必要하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6조를 개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만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유보하는 것이다. 각종 급여를 세전급여로 지급하여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아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가 이미 부과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략)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추가 : 3. 명예퇴직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③ (생략)

④항 추가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액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⑤항 추가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 전에 세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를 신청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연금계좌 적극 활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강화

(1) 연금계좌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학교기관에서 명퇴금을 받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공단에서는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때 2개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면 납부되는 세금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2개의 소득에 대하여 IRP에 불입시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하고자 한다. 학교기관과 공단의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납부되는 금액이 커지고, 이에 따라 과세이연되는 금액도 커지고 있다. 교직원들은 학교기관에서 지급한 명퇴금까지도 공단에서 합산하여 과세이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에 한정하여 과세이연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연금계좌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이 두 가지 퇴직소득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국립대학교 병원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사학연금에 새롭게 가입되기 시작하였다. 국립대학교 병원은 과거 공무원연금에도 있다가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기도 한 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 적용으로 재직월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해당 교직원에 대한 재직월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파악되지 못하여 퇴직소득 정산을 함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 이후에도 퇴직연금 취급기관에서 정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미 퇴직수당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것을 다시금 취소하고 재정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직기간에 대한 과세정보를 퇴직연금 취급기관이 입수하여 명확하게 세액정산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선행기관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후행기관이 지급하는 퇴직수당과 합산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행기관에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합산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 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 기관에서 지급받은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모두 IRP에 불입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에서 양 기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합하여 퇴직소득 정산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⁴⁵⁾

최완(20221)의 연구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과 달리 납세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⁴⁶⁾ 이는 대법원 2017두48543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면은 조형태 외1(202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다.⁴⁷⁾

현행의 퇴직소득 정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기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퇴직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공백월수나 제외월수, 휴직기간 등에 대한 월수의 합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간이 명기되어야 정확한 퇴직소득 정산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소득에 대한 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가 직접 그 이듬해 5월말까지 퇴직소득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다음 <표 15>는 소득세법 제148에 대한 개정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표 15>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소득을 정산함에 있어서 세액정산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유보하고 납세자가 익년도 5월에 퇴직소득 종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현금 인출 시 퇴직연금 취급기관 퇴직소득 과세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

45) 이는 퇴직소득 정산을 부정확하게 이행하는 것보다 퇴직연금 취급기관에서 정확하게 퇴직소득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세수의 정확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46) 최완, 2021, 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7권 제3호 : 35-75

47) 조형태·윤재원, 2020,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

수의무자는 서로 다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 이후 IRP에 가입할 경우 환급을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RP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도 중요하며, DB형의 경우에도 DC형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를 52개의 퇴직연금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IRP 가입을 권유할 경우 퇴직소득 환급에 대한 금융컨설팅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IRP의 가입 및 운용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여 IRP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IRP 계좌에 대하여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IRP 가입 시에 환급의 업무를 하게 되면 향후 원활한 후속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현행 퇴직 IRP 계좌 불입과 세액 정산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취급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접 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퇴직일시금 급여를 포함) 급여를 퇴직연금 취급기관에 불입하고 실제 현금 인출시 퇴직연금 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퇴직수당 연금화로 인한 기대효과 및 세제 혜택 (개선 효과)

가.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 생활 자금 마련

(1) 퇴직수당의 연금화 유도

안타깝게도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자가 대다수로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도 가능하다. 재직기간이 짧은 간호사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반공에 무방비 상태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급여를 가급적 세전급여로 퇴직 IRP 계좌에 불입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퇴직 시점에 일시금의 현금이 수중에 있게 되면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연금계좌인 IRP 계좌에 잔고가 있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 인출을 지양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불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2) 생활자금 소진의 방지책 마련

IRP가 제대로 된 노후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은퇴시점까지 꾸준히 IRP를 통해 납입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여유자금에 있는 고액소득자라고 가정할 경우에 IRP에 가입하여 금융상품을 운용한다면, 동 금액을 이자배당상품에 투자 시보다 세후소득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일시금 금액이 큰 고액 불입자가 저액 불입자보다 세제 절감의 유인이 크게 작용된다. 퇴직일시금 수령 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IRP에 가입하게 된다면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되며 인출시점에 저율(5.5%)로 과세가 된다. 또한, 불입된 원금을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게 되어 조세전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자배당소득의 세율과 퇴직소득의 세율의 차이로 인한 조세절감의 기회가 있다. IRP는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보다 세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참고로, 다음 <표 16>은 연금계좌와 일반계좌 세제 혜택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 16> 연금계좌와 일반계좌 세제 혜택 비교

구분	연금계좌	일반계좌
퇴직수당 입금	세전 급여로 연금계좌에 입금 or 퇴직소득세 환급	세후 급여로 일반계좌에 입금
운용수익	인출 시 까지 과세이연 (인출 시에 과세)	이자배당 소득세 과세 소득세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⁴⁸⁾
세율	3.3%-5.5% 과세	15.4% 과세
퇴직수당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퇴직소득세 감면 없음

나. 퇴직수당의 개인형퇴직연금 불입을 통한 수리적 효과 분석

다음은 A라고 하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24년 말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수당 9천만원을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IRP 불입을 통해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의 세후수익률을 비교한 것이다. 퇴직수당 금액은 90,090,000원을 가정해보자.⁴⁹⁾ 이때 2002년 이후 근속연수는 22년이며, 2002년 이전은 11년으로 가정해 보자. 퇴

48) 4억원에 대하여 5%의 수익률이 달성되면 연간 2천만원의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됨.

49) 퇴직수당은 2010년 이전 재직기간과 이후 재직기간에 의한 퇴직수당으로 구분하여 두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2010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월액×재직월수/12×재직기간별 지급률에 의해 산정

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60,060,000이 된다. 이때 산출되는 퇴직소득은 0원이 된다. 퇴직수당 2002년도 이후분 60,060,000에 근속연수공제 79백만원을 공제하면 차감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차감소득금액은 (-)금액으로 제로(0)가 된다.

2002년 이전분까지 세전급여로 IRP에 불입한다면 전체 90,090,000원을 불입할 수 있으며, 2002년 이후분만 IRP에 불입한다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60,060,000원을 불입하게 된다. 양 금액에 대하여 IRP에 불입하였을 때 세수효과 및 누적 금액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양 금액을 일반계좌에 불입하였을 때와 IRP에 불입한 경우와 2002년도 이전분과 2002년도 이후 분의 세수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운용수익률은 연간 7%이며, 이자소득세율은 15.4%를 가정하였다.

IRP 불입을 통한 투자효과는 투자에 따른 운용수익에 따른 이자소득세율 15.4%와 연금소득세율 5.5%의 차이로 귀결된다. 퇴직수당을 IRP에 불입함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세율 차이와 퇴직수당을 연금화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의 감면에 따른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래 <표 17>의 시뮬레이션은 IRP를 가입한 경우의 수익률을 일반상품 투자와 IRP에 2002년 이전분과 이후 분을 불입한 것에 대한 세수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수당을 IRP에 2002년도 이전분까지 불입하는 것이 누적 실효세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일반계좌와 IRP에 불입 시 세후수익률 상호 비교

(단위: 원)

구 분	퇴직수당을 일반계좌에 불입		퇴직수당을 IRP 불입	
	2002년도 이전분 포함	2002년도 이후분	2002년도 이전분 포함	2002년도 이후분
퇴직수당 총 수령금액	90,090,000	90,090,000	90,090,000	90,090,000
투자(저축) 불입원금	90,090,000	60,060,000	90,090,000	60,060,000
총 이자소득	25,256,650	16,837,760	25,256,650	16,837,760
이자소득세(15.4%)	3,889,525	2,593,010	0	0
연금소득세(5.5%)	0	0	1,262,833	841,888
총 납부세액	3,889,525	2,593,010	1,262,833	841,888
10년간 누적 실효세율	4.32%	4.32%	1.40%	1.40%

※ 현금 인출은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에 인출한 것으로 가정함.

하고,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재직기간별 지급률에 의해 산정된다. 공무원으로 33년 근무한 A의 보수월액은 4,550,000원이며, 기준소득월액은 7백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퇴직 시점에 수령하는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다. 4,550,000원 × 14년 ×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7백만원 × 19년 × 39%의 합인 90,090,000원이다.

V. 결 론

2024년 들어 고령화시대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퇴직수당 전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IRP를 통해 교직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불입함으로써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수당에 대하여 IRP 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불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령하는 퇴직수당 전액에 대하여도 연금계좌에 불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전액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3층 연금 체계 강화를 위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수직역연금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특수직역연금에서 수령하고 있는 일시금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IRP에 전액 세전급여로 불입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의 과세업무를 피하고 일시금을 연금화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적연금 개혁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바, 특수직역연금에서도 퇴직수당에 대한 연금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퇴직수당과 같은 일시금 급여에 대하여도 퇴직 시점에 IRP 계좌에 의무 이전하여 노후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의 통산장치인 IRP 이전 방안 제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노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실제적인 노후 소득 마련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통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이직이 잦은 유치원 교사 및 간호사 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일반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특수직역의 퇴직수당 일시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 제도 가입자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수당의 연금화가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퇴직수당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도 연금계좌에 전액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령한 퇴직수당 전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계좌(IRP 계좌 등)에 입금할 수 있는 퇴직수당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퇴직소득 과

세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퇴직수당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재직연수에 대한 문제해결과 정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퇴직수당은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직연수에 있어서 상한이 없는 사용자부담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전액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현재 2002년 불입분은 과세제외 퇴직급여로 보고 있으나, 비과세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한다.

셋째,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IRP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세전금액으로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퇴직수당을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수당 등을 IRP에 불입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급의 불필요한 과세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IRP 불입 사전결정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위해서는 연금공단과 퇴직연금 취급기관의 유기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퇴직수당의 정산을 합리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에 대한 연금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현행 법령과 과세 행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은 조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합리적인 법 해석과 과세행정 절차의 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실제로 IRP 불입을 한 가입자에게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조세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고령화 시대에 부합한 IRP 과세 행정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되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실제적인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장원, 2005, “퇴직수당의 법률적 성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통권 제19권 제1호 : 65-109,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수성·이세우, 2017,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도입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7권 제2호 pp.185-218.
- 김수성, 차명기, 2015,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 환급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4권, 1호 263p ~ 304p
- 노동부, 2009,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 한국채권연구원 용역보고서
- 문성훈·김수성, 2014,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vol.15, no.6, pp. 143-182
- 박여영, 2010, IRA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강화 필요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방하남·구건서·조동진·박규서·이영하, 2006, 퇴직연금 , (주)중앙경제
- 보험개발원, 2008,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CEO REPORT
- 이진섭, 2010, 개인형퇴직연금(IRA) 활성화를 위한 방안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이진섭, 2010, 개인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IRA 개선방안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조형태·윤재원, 2020,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
- 최완, 2021, 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7권 제3호 : 35-75
- 최원석, 최기호, 김수성, 2019, 사학연금기금 재정안정을 위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123-163
- 최형준, 2009, 퇴직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 실무해설서 , 한국투자증권, 2010.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
-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의 이해와 활용”, KB퇴직연금연구소 발간자료



제2주제 토론문①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
으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류연호(변호사, 삼정회계법인)

제2주제(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류연호 변호사

발표자께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역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적 성격에 따라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문제점을 다루는 단계를 넘어, 퇴직수당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위한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일시금의 현금이 수중에 있게 되면 퇴직자는 이를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릴 가능성이 높고,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도 가능하기에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빈곤에 무방비 상태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급여를 가급적 세전급여로 퇴직 IRP 계좌에 불입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퇴직수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립을 통해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불입함으로써 현금 인출시점에 과세(과세이연)되도록 하는 퇴직수당의 연금화 방안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토론자는 우선 발표자께서 주요하게 다루고 계신 쟁점 중 퇴직수당의 법적성격을 고려한 법령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으로는 (발표문 12~13페이지 참고) 퇴직수당의 법적성격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규정 체계의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에도, 퇴직수당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와 근속연수 산정 시 발생하는 문제는 발제자가 제시하신 개정안과 같이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105조의 개정을 통해 보다 단순화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제자께서 보다 설득력있다고 생각하시는 방안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자께서 퇴직수당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이 아니라 동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추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IRP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세전금액으로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퇴직수당을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 단계에서 IRP 불입 사전결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으로는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연금개시연령에 이르는 소득 공백기에 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퇴직수당 역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불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으로는 위와 같은 방안이 오히려 통일적인 제도운영으로 과세행정상의 문제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자께서 IRP 불입 사전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는 추가적인 논거가 있으시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토론문②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성격과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
으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토론문]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고찰 및 연금계좌 불입을 중심으로

강지현(법무법인(유)광장 파트너변호사, 법학박사)

발제자님들께서는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과세방법과 IRP의 제도적 목적과 취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여 주시고,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연금계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퇴직수당의 과세상 법 해석에 대한 문제점과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과세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여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소득세법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저로서도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발제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자님들께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을 IRP 계좌에 이전하여 수령함으로써 퇴직수당을 연금화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발제자님들께서 제안하신 방안, 즉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전에 개인 IRP를 개설하여 퇴직수당을 의무적으로 해당 IRP로 수령함으로써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고 또한 퇴직수당을 연금화하는 방안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을 IRP 계좌로 의무 수령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발제를 통해 적절히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재직기간이 짧은 간호사나 유치원 교사와 같은 경우에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급여를 퇴직 IRP 계좌에 불입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수당을 연금화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발제자님들의 발제 및 제안 내용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퇴직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부터 공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2002년도 이전분 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퇴직급여와 2002년 이전분 퇴직급여가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이 아닌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비교적 간이하게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자들에 대한 혜택이 조금이나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직역을 불문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절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직역연금에 있어서도, 퇴직수당에 대한 IRP 의무 불입 등을 통한 연금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발제자님들의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이번 발제문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3주제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

발표자 이창규(중앙대학교 연구교수)

마리화나 과세의 합헌성 논쟁 : 헌법적 한계와 법적 과제

이창규*

<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마리화나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마리화나 과세는 헌법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리화나 과세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판례는 먼 미래에 우리나라의 마리화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과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IRC §280E 조항으로 인해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고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마리화나 산업체에 대해 IRC §280E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최근 판례에서도 법원은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비용 공제 제한이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마리화나 합법화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특히, 과세 문제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과세 논쟁을 중심으로 헌법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새로운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기준 마련, 소득의 정의, 비용 인정 기준, 법원의 해석, 헌법적 해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어 : 마리화나 과세, 합법화 논쟁, 수정헌법 제16조, IRC §280E, 헌법적 문제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전담교수 / 법학박사 / 기술거래사

< 목 차 >

I. 서(序)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II.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합헌성 논의

1. 미국 수정헌법 제16조 제정 역사 및 정책
2. 마리화나 합법화 현황과 과세 현황
3. 마리화나 연방 합법화 법안 추이

III. 마리화나의 합헌성 논쟁

1.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과세 문제
2. IRC §280E의 수정헌법 제8조의 적용
3. 마리화나 합법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 방향

IV. 우리나라에의 시사(示唆)

1. 마리화나 과세 논의의 목적
2.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우리나라 세제에 주는 시사점

V. 결(結)

참고문헌

I. 서(序)

1. 연구 목적

마리아나의 합법화 및 의료용 사용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마리아나에 대한 과세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른 세수 확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¹⁾ 하지만 마리아나 과세는 헌법적 문제 등을 일으키며, 국가마다 법률 체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 각국의 상황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마리아나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하는 바를 도출한다.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26 U.S. Code §280E(이하 IRC §280E)는 불법 약물 거래에 연루된 납세자에게 모든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²⁾ 이에 따라 미국의 마리아나 생산업체들은 사업 비용을 공제받지 못해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많은 마리아나 생산회사가 수정헌법 제16조(16th Amendment)³⁾ 위반 등 여러 이유로 IRC §280E를 향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마리아나 생산업체에 대해 IRC §280E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⁴⁾ 이에 마리아나 사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너

1) 현재 21개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주리, 몬테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에서 오락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TAX FOUNDATION, Green Rush: Principles for Taxing Cannabis, <<https://taxfoundation.org/taxedu/videos/cannabis/>>(last visited October 31, 2024)

2) 26 U.S. Code § 280E - Expenditures in connection with the illegal sale of drugs
No deduction or credit shall be allowed for any amount paid or incurred during the taxable year in carrying on any trade or business if such trade or business (or the activities which comprise such trade or business) consists of trafficking in controlled substances (within the meaning of schedule I and II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which is prohibited by Federal law or the law of any State in which such trade or business is conducted(Added Pub. L. 97 - 248, title III, § 351(a), Sept. 3, 1982, 96 Stat. 640.)

IRC §280E - 과세 연도 동안 해당 거래 또는 사업(또는 해당 거래 또는 사업을 구성하는 활동)이 연방 법 또는 해당 거래 또는 사업이 수행되는 주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규제 약물(통제물질법 I 및 II의 의미 내에서)의 밀매로 구성된 경우, 과세 연도 동안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거나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3) Sixteenth Amendment -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

수정헌법 제16조 - 의회는 각 주에 분배하거나 인구 조사나 인구 조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소득원에서 유래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4) 이 판례는 미국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운영되는 마리아나 사업체가 연방 소득세법

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불평하며, 자신들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전개할 미국의 최근 마리화나 과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납세자들이 수정 헌법 제16조에 따른 소득(income)의 정의는 이득을 의미하며, 필요하고 일반적인 사업 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면, 회사의 총소득(gross income)이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여러 차례 IRC §280E가 수정헌법 제16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마리화나 과세와 관련한 최근 판례는 2023년 제10순회 항소법원(Tenth Circuit)의 *Standing Akimbo, LLC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법원은 마리화나 생산업체가 일반적인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연방세법의 IRC §280E가 마리화나 산업에 적용되어, 다른 일반적인 사업체들과 달리 비용 공제를 제한한다.⁵⁾ 그러나 판례는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비용 공제 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마리화나 산업이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조치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리화나 과세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판례는 머나먼 미래의 국내 마리화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마리화나 산업이 합법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선진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과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마리화나 과세 논쟁이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마리화나 합법화를 고려하는 모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

마리화나 과세제도 관련 국내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으며, 외국(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마리화나 과세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헌법적 가치와의

280E 조에 의해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법원은 280E 조가 마리화나 사업체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는 연방 법 우위의 원칙을 근거로, 마리화나가 여전히 연방 법에서의 불법 물질이므로 280E 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주에서 합법화되었다더라도 연방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141 S. Ct. 2236 (2021) (mem.)

5) *Standing Akimbo, LLC v. United States*, 955 F.3d 1146, 1158 n.7 (10th Cir. 2020).

충돌에 관한 연구와 둘째, 마리아나 과세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 헌법적 가치와 충돌에 관한 연구이다. Beckett Cantley & Geoffrey Dietrich(2021)⁶⁾는 미국에서 마리아나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IRC §280E는 마리아나 생산업체의 비용 공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마리아나 생산업체에 마리아나 생산업체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며, 헌법적 문제도 제기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수정헌법 제16조에 따른 소득의 정의와 매출 원가의 계산 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했으며, 향후 IRC §280E의 합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마리아나 과세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이다. NIMA H. MOHEBBI *et al.*(2015)⁷⁾은 마리아나의 합법화로 주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연방 법과의 충돌이 문제라고 언급한다. 마리아나 사용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연방 마약 관련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아나를 포함하는 총괄 세금을 도입하여 헌법적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의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기존 연구들이 주로 마리아나 과세의 헌법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실제 과세 행정과 판례에서의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마리아나 과세 문제에서의 연방 법과 주법 간의 충돌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내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미국에서의 마리아나 합헌성 논의

1. 미국 수정헌법 제16조 제정 역사 및 정책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1971년 6월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이 마약 남용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마약 통제 기관과 마약 치료 노력에 대한 연방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⁸⁾ 닉슨 대통령은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모든 중독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닉슨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의회는 기존 연방 마약법을 통합하고 범위를 확장하며, 연방 마약법 정책의 본질을 변경하고 통제 물질이 관련된 연방 법 집행을 강화한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을 통과시켰다. 마약과의 전쟁은

6) Beckett Cantley & Geoffrey Dietrich, The Cannabis Conundrum: Constitutional & Policy Concerns in Taxation of the Marijuana Industry, 10 *Legis. & Pol'y Brief* 39, 57-58 (2021).

7) Nima H. Mohebbi, Samuel T. Greenberg & Ian S. Speir, Crafting a Constitutional Marijuana Tax, 69 *TAX LAW*, 214, 215, 213-230 (2015).

8) Chris Barber, Public Enemy Number One: A Pragmatic Approach to America's Drug Problem, RICHARD NIXON FOUNDATION (Nov. 10, 2020, 5:09 PM), <<https://www.nixonfoundation.org/2016/06/26404/>>(last visited October 31, 2024)

로널드 윌슨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 시절 더욱 가속화되어 비폭력 마약 범죄에 대한 수감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 근절 캠페인이 시행되었다.⁹⁾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약 25%에 불과했다.¹⁰⁾ 이후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의학적 사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긍정적 사용에 대한 인식이 상승했다. 2018년 말까지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수 증가, 의료 목적의 이용 등의 이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마약 전면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한 공공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 연방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두고자 했다. 특히, 직접세 부과는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강했다. 그러나 남북전쟁(The Civil War) 당시 일시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연방 대법원은 이를 지지했다. 수정헌법 제16조에 의한 소득세 부과를 급증하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 확보의 필요성이었다.¹²⁾ 당시 미국은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식민지를 얻게 되면서 해외 영토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급증했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 기반 시설 투자도 확대되어야 했다. 소득세 도입은 이러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대통령은 소득세 법안에 반대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헌법 개정안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소득세 도입에 대한 그의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소득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태프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회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를 승인했다. 이는 당시 소득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¹³⁾ 191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6조는 인구 조사나 다른 조사와 상관없이, 어떠

9) Just Say No, HISTORY (Aug. 21, 2018), <https://www.history.com/topics/1980s/just-say-no> (describing surge in nonviolent drug offense incarcerations from 50,000 in 1980 to 400,000 by 1997).

10) Justin McCarthy, Two in Three Americans Now Support Legalizing Marijuana, GALLUP (Oct. 22, 2018), https://news.gallup.com/poll/243908/two-three-americans-support-legalizingmarijuana.aspx?g_source=link_news9&g_campaign=item_258149&g_medium=copy (last visited October 31, 2024)

11) Ibid.

12) *Springer v. United States*, 102 U.S. 586, 589, 592, 602 (1880).

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각 주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수정헌법 제16조가 천명된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16조는 1895년 *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일부 소득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 간에 인구 비례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¹⁴⁾ 즉,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⁵⁾ 이 판결에 대한 반발과 함께 소득세 부과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13년에 수정헌법 제16조가 승인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 간의 인구 비례로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Pollock* 사례를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연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 절실했고, 이에 따라 주 간의 분배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정헌법 제16조가 제안되었고, 의회를 통과해 비준됨으로써 연방정부는 소득세를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수정헌법 제16조는 연방정부의 소득세 부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원의 개입 없이 안정적인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했다. 수정헌법 제16조는 소득세 자체의 합법성이나 IRS의 권력 남용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연방정부의 소득세 부과 권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2. 마리아나 합법화 현황과 과세 현황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이 제정된 이후 마리아나는 엑스터시(Ecstasy), 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 LSD), 헤로인(heroin)과 함께 1급 약물로 지정되었다.¹⁸⁾ 통제물질법에 따르면 1급 약물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허용되는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¹⁹⁾ 그러나 최근 여러

13) 44 Cong. Rec. 4389, 4389 - 90, 4440 (1909).

14)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157 U.S. 429 (1895).

15) *United States v. Sitka*, 845 F.2d 43, 45 - 46 (2d Cir. 1988).

16) Erik M. Jensen, Did the Sixteenth Amendment Ever Matter? Does it Matter Today?, 108 *NW. U. L. REV.* 799, 814 (2014).

17) *Ibid.* p.799, p.817.

18) John Vigorito, Comment, Creating Constitutional Cannabis: An Individual State's Tenth Amendment Right to Legalize Marijuana, 46 *U. TOL. L. REV.* 221, 223 - 24 (2014).

19) Rebecca L. Haffajee, Robert J. MacCoun & Michelle M. Mello, Behind Schedule—Reconciling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오피오이드(opioid) 또는 아편유사제(阿片類似劑) 등 다른 약물 대신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리화나의 재분류 또는 분류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보면 수정헌법 제6조 제2항의 최우선 조항(Supremacy Clause)이 연방 법의 우위를 명시하며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시도를 억제하는 가운데, 의회의 예산 제한 조치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DOJ)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²⁰⁾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자체 법률에 따라 의료용 및 일반 마리화나의 사용, 유통, 소지, 재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 법과는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마리화나 합법화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IRS는 재무부 소속 기관이며, 연방 마리화나 범죄와 관련된 국세 법규(IRC)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10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IRS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간과하지 않고,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²¹⁾

2020년 현재 미국 내 21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였으며, 이 중 1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락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였다.²²⁾ 마리화나 합법화는 주정부에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수 증가이다. 또한, 마리화나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마리화나 법률 시행에 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에 마리화나 관련 판매세 및 라이선스 수수료로 총 3억 9,550만 달러(약 5,523조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다.²³⁾ 이는 주류 판매 수입을 1억 7,200만 달러(약 2,402억 원) 초과하는 수치이며, 전년 대비 약 2,800만 달러(약 391억 원) 증가한 것이다.²⁴⁾ 그러나 마리화나가 널리 합법화되었음에도, IRC §280E는 여전히 마리화나 회사들이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고, 세금 부담을 가중하며,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²⁵⁾

Federal and State Marijuana Policy, 379 *NEW ENG. J. MED.* 501, 501 (2018).

20) *Patients Mut. Assistance Collective Corp. v. Comm'r of Internal Revenue*, 151 T.C. 176, 185 - 86 (2018).

21) *Alpenglow Botanicals, L.L.C. v. United States*, 894 F.3d 1187, 1193 (10th Cir. 2018) (quoting *Feinberg v. Comm'r of Internal Revenue*, 808 F.3d 813, 814 (10th Cir. 2015)).

22) Jeremy Berke & Shayanne Gal, All the States Where Marijuana is Legal—and 5 More that Just Voted to Legalize It, *BUS. INSIDER* (Nov. 6, 2020), <<https://www.businessinsider.com/legal-marijuana-states-2018-1>>(last visited October 31, 2024).

23) Washington Marijuana Revenues, And Health, *WASH. ST. TREASURER*, <<https://tre.wa.gov/portfolioitem/washington-state-marijuana-revenues-and-health/>>(last visited Nov. 18, 2020).

24) *Ibid.*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RC §280E는 연방 법 또는 주법에 따라 금지된 통제 물질 거래와 관련된 사업 비용 공제를 금지한다. 대부분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연방 법에서는 여전히 통제 물질로 분류되어 IRC §280E를 적용한다.²⁶⁾ IRC §280E는 불법 활동이 관련된 사업 비용 공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마리화나 사업이 연방법상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사업체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부분의 사업 비용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는 마리화나 사업체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업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에 비해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합법적인 사업체와 비교하여 마리화나 사업체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한, 높은 세금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높은 세금 부담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은 마리화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IRC §280E는 본래 불법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방지하고, 불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불법적인 사업 활동이 관련된 비용을 공제해 주지 않음으로써 불법 활동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불법 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dmondson v. Comm'r* 판례에서 납세자는 코카인 밀매 사업이 관련된 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공제했다. 당시 법원은 이러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판결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불법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²⁷⁾ 이 판례는 마리화나 생산업체가 IRC §280E에 따라 어떤 종류의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결은 마리화나 사업체가 다른 합법적인 사업체에 비해 훨씬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근거가 되었으며, 마리화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²⁸⁾ *Olive v. Comm'r of Internal Revenue* 판결에서는 법원은 IRC §280E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마리화나 사업이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²⁹⁾ 주법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다더라도, 연방법상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방 세법인 IRC §280E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

25) Liam McKillop, Note, Pass the Revenue: How Section 280E is Harming the Medical Marijuana Industry, 2 INT'L COMP. POL'Y & ETHICS L. REV. 849, 850 (2019).

26) *Californians Helping to Alleviate Med. Problems, Inc. v. Comm'r of Internal Revenue*, 128 T.C. 173, 181 (2007).

27) *Edmondson v. Comm'r of Internal Revenue*, T.C.M. 1981-623 (1981).

28) *Californians Helping to Alleviate Med. Problems, Inc. v. Comm'r of Internal Revenue*, 128 T.C. 173, 181 (2007).

29) *Olive v. Comm'r of Internal Revenue*, 792 F.3d 1146, 1150 (9th Cir. 2015).

을 강조했다. 이 판결로 인해 마리화나 사업체는 다른 합법적인 사업체에 비해 훨씬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Comm'r v. Sullivan*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IRC §280E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의회가 특정 유형의 사업에 대한 비용 공제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³⁰⁾

결론적으로 연방 법과 주법이 충돌한다고 할 수 있다. 연방 법 우위 원칙에 따른 IRC §280E가 적용된다. 그리고 사업의 형평성과 관련해 마리화나 사업만 비용 공제 제한으로 불리한 상황이다.³¹⁾ 연방 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더라도 연방 법인 IRC §280E가 우선 적용된다. IRC §280E는 불법 활동이 관련된 비용 공제를 금지하여 불법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방법상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리화나 사업만 비용 공제를 제한받아 다른 합법적인 사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동일한 사업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연방법상의 분류 때문에 마리화나 사업만 불리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IRC §280E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와 개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³²⁾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합법화의 부작용으로 상업용 마리화나 완화 비용을 지적한다. 즉, 마리화나 완화 비용이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상업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마리화나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가 심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할 수 있다. 마리화나 관련 범죄, 특히 마약 밀매 등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콜로라도주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의료비용, 고등학생 중퇴율, 우발적 중독, 교통사고 사망률, 음주운전 관련 법원 비용, 청소년 사용을 및 고용주 관련 비용이 4.5:1로 증가하였다고 한다.³³⁾ 이러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리화나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세수를 교통안전 조치 강화, 청소년 사용 예방 교육, 의료비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마리화나 합법화는 주정부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사이에서 균형

30) *Alpenglow Botanicals, LLC. v. United States*, 894 F.3d 1187, 1201 (10th Cir. 2018) (citing *Comm'r v. Sullivan*, 356 U.S. 27, 28 (1958)).

31) *Ibid.*

32) *Ibid.*

33)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Legalized Marijuana*, CENTENNIAL INST. 3 (Nov. 18, 2018), <<http://cdncentennial.pressidium.com/centennial/wp-content/uploads/2019/03/Economic-and-Social-Costs-of-LegalizedMarijuana-v1.3.pdf>>(last visited October 31, 2024)

을 찾는 복잡한 문제이다. 입법자와 공공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마리아나 연방 합법화 법안 추이

뉴욕주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Jerrold Nadler) 의원이 제안한 마리아나 재투자·기록말소 기회법(The Marijuana Opportunity, Reinvestment, and Expungement : MORE Act)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다.³⁴⁾ 표결 결과, 하원 본회의에서 220대 204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러한 MORE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고, 과거 마리아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삭제하며, 연방 매출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⁵⁾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의회에 있는 다른 위기들 속에서 양당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³⁶⁾

제출된 법안 중 마리아나 산업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상원의원인 콜로라도주 민주당의 코리 가드너(Cory Scott Gardner)와 매사추세츠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Ann Warren)이 제안한 주위임을 통한 수정헌법 제10조 강화(Strengthening the Tenth Amendment Through Entrusting States : STATES Act) 법안이다.³⁷⁾ STATES 법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통제물질법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정헌법 제10조를 강화한다. 이 법안은 통제물질법에 따른 마리아나의 분류를 변경하지 않아 마리아나는 연방법상 일정 I 약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STATES Act는 IRC §280E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법을 따르는 마리아나 생산기업은 더 이상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정상적인 사업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또한,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William Pelham Barr)는 주가 마리아나를 합법화할지에

34) Kyle Jaeger, Congress Planning Vote on Federal Marijuana Legalization Bill in September, Sources Say, MARIJUANA MOMENT (July 24, 2020), <<https://www.marijuanamoment.net/congress-planning-vote-on-federalmarijuana-legalization-bill-in-september-sources-say/>>(last visited October 31, 2024)

35) *Ibid.*

36) Whitt Steineker, 3 Cannabis Legislation Predictions Ahead of the 2020 Election, CANNABIS BUS. TIMES (July 6, 2020), <<https://www.cannabisbusinesstimes.com/article/3-cannabis-legalization-predictions-2020>>(last visited October 31, 2024)

37) Melissa Kuipers Blake, Marijuana and the 10th Amendment: Strange Bedfellows or Natural Allies, L. WEEK COLO. (Apr. 15, 2019), <<https://www.bhfs.com/Templates/media/files/Marijuana%20and%20the%2010th%20Amendment.pdf>>(last visited October 31, 2024)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마리화나에 관한 현재 연방 및 주법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이를 통해 주에 맞는 마리화나 정책을 입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마리화나 생산업체가 다른 모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같이 취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³⁸⁾ 마리화나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안타깝게도 하원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였음에도,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관련 법안 통과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마리화나 산업을 찬성하는 의회에서도 주 택구매용 대출 면허에 관한 법률(Secure and Fair Enforcement : SAFE Act)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³⁹⁾ SAFE Act는 마리화나 사업체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마리화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SAFE Act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관련 사업체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불법 물질이었기 때문에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SAFE Act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여 마리화나 사업체들이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⁴⁰⁾

III. 마리화나의 합헌성 논쟁

1.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과세 문제

마리화나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산업의 세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마리화나 회사들은 IRC §280E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규정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된 쟁점은 소득의 개념 정의이다.⁴¹⁾ 마리화나 생산회

38) Jeffrey A. Singer, AG Barr Signals Support for Tenth Amendment-Style Approach to Marijuana Legalization, FOUND. FOR ECON. EDUC. (Apr. 12, 2019), <<https://fee.org/articles/ag-barr-signals-support-for-tenth-amendment-styleapproach-to-marijuana-legalization/>>(last visited October 31, 2024)

39) Kellan Howell, This Congressman Says the New Congress Could Legalize Weed, NEWSY (Jan. 7, 2019), <<https://www.newsny.com/stories/earl-blumenauer-legal-weed-could-pass-in-new-congress/>>(last visited October 31, 2024)

40) Natalie Fertig, Coronavirus spells doom for federal cannabis legislation, POLITICO (May 12, 2020), <<https://www.politico.com/news/2020/05/12/coronavirus-cannabis-legislation-252313>>(last visited October 31, 2024)

41) *Helvering v. Edison Bros. Stores, Inc.*, 133 F.2d 575, 579 (8th Cir. 1943); *Eisner v. Macomber*,

사들은 일반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남는 순수한 이익만을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²⁾ 다시 말해, 임대료, 인건비, 홍보 비용 등과 같은 필수적인 비용을 모두 공제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RS와 조세법원(U.S. Tax Court)은 마리카나 생산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⁴³⁾ 이들은 법 조항에 명시된 '총소득'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모든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마리카나 생산업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 대법원 판례인 *Eisner v. Macomber* 판례를 근거로 소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⁴⁴⁾ *Eisner v. Macomber* 판례는 소득은 부의 증가(increase in wealth)라고 정의하며, 단순한 자산의 증가가 아닌 새롭게 창출된 가치(newly created value)를 소득으로 보았다. 따라서, 마리카나 생산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단순한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실제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지를 따져보고, 이 판례를 근거로 소득세 부과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이 판례는 소득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마리카나 생산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투자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얻는 순수한 이익만이 진정한 소득이라고 주장한다.⁴⁵⁾

또한, 마리카나 생산회사들은 제2순회법원(Second Circuit)의 *Davis v. United States* 판례를 인용하여, 일반적인 사업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⁴⁶⁾ *Davis v. United States* 판례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즉,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은 소득 계산 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카나

252 U.S. 189 (1920); *Davis v. United States*, 87 F.2d 323, 324 (2nd Cir. 1937); *N. Cal.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r*, 153 T.C. 65 (2019); *Reading v. Comm'r*, 70 T.C. 730 (1978); *Pittsburgh Milk Co. v. Comm'r*, 26 T.C. 707 (1956); *Anderson Oldsmobile, Inc. v. Hofferbert*, 102 F.Supp. 902 (D. Md. 1952).

42) *N. Cal.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r*, 153 T.C. 65 (2019) pp.77 - 84 (Gustafson, J.,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Alpenglow Botanicals, LLC v. United States*, 894 F.3d 1187, 1198 - 02 (10th Cir. 2018); *Opening Brief for the Appellant, Patient Mut. Assistance Collective Corp. v. Comm'r*, 2020 WL 2948092, pp.48-67 (9th Cir. 2020).

43) *N. Cal.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r*, 153 T.C. 65 (2019) p.70.

44) *Eisner v. Macomber*, 252 U.S. 189 (1920); Brief for the Appellant, supra note 115, pp.36-46; *N. Cal.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r*, 153 T.C. 65 (2019), 153 T.C. at 77 - 84 (Gustafson, J.,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45) *Eisner v. Macomber*, 252 U.S. 189 (1920) p.207.

46) *Davis v. United States*, 87 F.2d 323, 324 (2d Cir. 1937).

화나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IRC §280E의 적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규정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 공제를 제한하여,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앨런 구스타프(Allen Gustafson 이하, Gustafson) 판사는 IRC §280E가 납세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⁴⁷⁾ Gustafson 판사는 IRC §280E가 모든 비용 공제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소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⁴⁸⁾ 즉, IRC §280E는 마치 벌금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세금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제10순회 항소법원은 Gustafson 판사의 *Standing Akimbo, LLC v. United States*에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⁴⁹⁾ 제10순회 항소법원은 IRC §280E가 의회의 권한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IRS가 이 조항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Gustafson 판사는 280E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리화나 사업체들이 280E 조항의 적용에 대해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은 IRC §280E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조항의 합헌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제10순회 항소법원은 *Standing Akimbo, LLC v. United States*를 통해 IRC §280E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했다. 법원은 먼저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정의는 수정헌법 제16조에서 정의된 소득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즉, 의회는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법원은 매출 원가와 같은 특정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의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⁵⁰⁾

즉, 의회는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IRC §280E는 이러한 의회의 권한 행사의 한 예시라고 보았다. 법원은 IRC §280E가 특정 비용의 공제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회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제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제10순회 항소법원은 IRC §280E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의회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47) *N. Cal.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r*, 153 T.C. 65 (2019) pp.77-90 (Gustafson, J.,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48) *Ibid.*

49) *Standing Akimbo, LLC v. United States*, 955 F.3d 1146, 1158 n.7(10th Cir. 2020)

50) *Ibid.* p.81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마리화나 사업체들에는 불리한 소식이지만, 법적으로는 IRC §280E의 합헌성이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2. IRC §280E의 수정헌법 제8조의 적용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은 IRC §280E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납세자들은 IRC §280E가 헌법상 과도한 벌금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⁵¹⁾ 즉, IRC §280E에 따라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⁵²⁾ 그러나 조세법원(U.S. Tax Court)은 납세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IRC §280E에 따른 비용 공제 거부가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벌금은 형사 처벌의 성격을 띠지만, IRC §280E는 단순히 세법에서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원은 IRC §280E가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IRC §280E의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이지만, 법원이 헌법상의 권리 보호에 대해 너무 엄격하지 않게 판단할 경우, IRC §280E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⁵³⁾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IRC §280E가 헌법상 과도한 벌금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 개정안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⁵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Gustafson* 판사와 *코플랜드* (이하, *Copeland*) 판사는 IRC 280E 조항이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⁵⁵⁾

Gustafson 판사는 IRC §280E가 수정헌법 제8조 개정안에 따라 벌금에 해당하지만, 수정헌법 제8조 개정안이 법인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벌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정헌법 제8조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Copeland* 판사는 한 발 더 나가 IRC §280E가 마리화나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너무 광범위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즉, IRC §280E는 마리화나 사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비용 공제를 전혀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벌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판사 모

51) *N. Cal.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r*, 153 T.C. 65, 68 (2019); 26 U.S.C. §280E (prohibiting deductions for expenditures relating to the illegal sale of drugs); U.S. CONST. amend. VIII. (outlawing excessive fines as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law).

52) *N. Cal.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r*, 153 T.C. 65 (2019) p.68 (*Timbs v. Indiana*, 139 S. Ct. 682, 686 (2019)).

53) *Ibid.* p.90 (*Gustafson, J.*,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54) *Ibid.*, pp.88~90.

55) *Ibid.* p.93 (*Copeland, J.*, dissenting).

두 IRC §280E가 처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8조 개정안의 과도한 벌금 조항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Gustafson 판사는 수정헌법 제8조 개정안의 생산업체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강조했고, Copeland 판사는 IRC §280E의 광범위한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⁵⁶⁾

3. 마리화나 합법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 방향

마리화나는 식물에 속하며, 다양한 카나비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특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THC)과 카나비디올(이하, CBD)의 함량 비율에 따라 약리학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THC는 향정신성 작용을 유발하여 주성분으로 함유된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 차원에서 불법 물질로 분류된다. 반면, CBD는 비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어 의료용 및 건강 기능 식품 등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주 법에서는 연방 법과는 별개로 마리화나와 CB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마리화나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는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불법 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⁵⁷⁾ 하지만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가 건강에 해롭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더 많은 사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다.⁵⁸⁾

한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마약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리화나에 더 많이 중독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또한, 마리화나는 건강에 해롭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정치인, 경찰, 사업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마리화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56) Ibid.

57) 마리화나에 포함된 CBD 성분이 뇌진증, 암,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훈철, “의료용 대마 사용에 대한 의견 현황과 미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25호, 2019,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3면.

58) 위의 자료, 1~3면.

를 들어, 일반적인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와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사업 특성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리화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불평한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자신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마리화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헌법에 따라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즉, 정부가 어떤 비용을 공제해 주고 어떤 비용을 공제해 주지 않을지는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IV. 우리나라에의 시사(示唆)

1. 마리화나 과세 논의의 목적

미국 마리화나 과세 논쟁은 단순히 한 국가의 특수한 현상을 넘어, 마약 정책, 규제, 과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마리화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합법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험은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와 함께 과세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를 넘어, 마리화나 합법화를 고려하는 모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과세 논쟁은 먼 미래에 우리나라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고려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례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과세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미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과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는 법적 논쟁과 판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마리화나 과세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리화나 산업이 합법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때, 미국의 판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과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리화나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마리화나 과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마리화나 과세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마리화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마리화나 과세는 단순한 수입 증대를 넘어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우리나라 세제에 주는 시사점

1)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과세 문제의 시사점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마리화나 관련 사업체들이 직면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IRC 280E의 적용이다. 이 조항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 공제를 제한하여, 마리화나 사업체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세금 부담하게 한다.

주요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소득의 정의이다. 마리화나 회사들은 일반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이익만을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IRS는 모든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판례의 내용이다. *Eisner v. Macomber* 판례는 소득은 부의 증가이며, 단순한 자산 증가가 아닌 새롭게 창출된 가치라고 정의한다. 마리화나 회사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소득세 부과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다. *Davis v. United States* 판례는 일반적인 사업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특히, *Gustafson* 판사는 IRC §280E가 납세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벌금과 같은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10순회 항소법원이 판결한, *Standing Akimbo, LLC v. United States*에서 IRC §280E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의회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된 세법 논쟁은 국내 과세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마리화나 산업처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의 과세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

생활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둘째, 소득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다. 소득의 정의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새로운 경제 활동의 등장으로 인해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비용 인정 기준이다. 사업 비용의 인정 기준은 납세자의 세 부담에 큰 영향을 준다.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완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해석과 행정 기관의 집행 간의 조화이다. 법원의 판결과 행정 기관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과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법원과 행정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리카나 합법화와 관련된 미국의 세법 논쟁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 제도 또한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시사점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IRC §280E에 대한 수정헌법 제8조의 적용의 시사점

미국에서 마리카나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마리카나 생산업체들은 IRC §280E의 적용으로 인해 비용 공제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과도한 벌금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헌법상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 위반 여부이다. 마리카나 사업체들은 IRC §280E 조항이 사실상 벌금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둘째, 판사들의 다양한 견해이다. Gustafson 판사와 Copeland 판사는 IRC §280E 조항이 처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8조 개정안의 과도한 벌금 조항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마리카나 합법화와 관련된 세법 논쟁은 한국 과세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신규 산업에 대한 차별적 세율 적용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 적용이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세법의 유연성 확보이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거나 유권 해석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세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헌법적 해석의

중요성이다. 세법 관련 소송에서 헌법적 해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리화나의 생산, 유통, 소비가 헌법상 어떠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마리화나 과세를 통해 얻은 수익이 공공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공존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 속에서 헌법적 해석은 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또한, 특정한 과세 방식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사법부의 역할이다. 사법부는 세법의 합헌성을 판단하고,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소임을 수행한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된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법적인 문제를 넘어 헌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헌법적 한계와 과세 권한의 균형, 신규 산업에 대한 세법 적용의 유연성, 법원의 역할 등은 우리나라 세법 개혁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우리나라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마리화나 합법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 방향의 시사점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은 단순히 약물의 합법화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일으킨다. 특히, 마리화나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다른 일반 사업체와 동일한 세금 부담을 요구하며, 정부는 새로운 세원 확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금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는 이러한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마리화나 합법화의 찬반 논쟁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세수 증대, 불법 거래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건강 문제, 중독 문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둘째, 세금 부과 문제이다.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다른 사업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규는 마리화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셋째, 법원 판결의 내용이다. 법원은 마리화나 사업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도 하지만, 대체로 정부의 세금 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하고 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된 세법 논쟁은 한국 과세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세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이다. 마리카나 사업체들은 다른 사업체와 동일한 세금 부담을 요구하며, 이는 세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듯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불이익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리카나 사업체가 다른 일반 사업체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 적용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세법 적용 기준을 마련할 때는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세법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세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령, 세법 개정 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헌법과 세법의 조화이다. 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세법을 도입할 때 헌법적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마리카나 사업체가 헌법에 근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세법이 헌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헌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V. 결(結)

이 글은 마리카나 합법화와 함께 떠오른 과세 문제, 특히 미국에서의 헌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리카나 합법화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특히, 과세 문제는 마리카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에서 제시된 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마리카나 합법화에 대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마리카나가 합법화되면서 발생한 과세 문제는 마리카나 산업의 특수성과 연방법과 주법 간의 충돌, 그리고 헌법 해석의 어려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IRC §280E는 마리카나 사업체들의 비용 공제를 제한하여 높은 세금 부담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연방법의 우위를 인정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례의 논리는 수정헌법 제16조에 따른 소득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마리카나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 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리카나 합법화 이후 과세 문제이다. 마리카나 사업체들은 일반 사업체와 동일하게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 이익에 대

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IRS는 마리화나 사업에 특별히 적용되는 조항(IRC §280E)을 근거로 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IRC §280E의 합헌성 논쟁이다.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IRC §280E가 헌법상 과도한 벌금을 금지하는 수정 헌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IRC §280E가 합헌으로 판결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 방향이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찬성 측은 세수 증대, 불법 거래 감소 등을 주장하고, 반대 측은 건강 문제, 중독 문제 등을 우려한다.

나아가 주요 쟁점으로는 소득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순수 이익만을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IRS는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비용공제와 관련해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일반 사업체와 동일하게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IRC §280E는 이를 제한한다. 헌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은 IRC §280E가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과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마리화나 사업체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과세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마리화나 산업처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의 과세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다. 소득의 정의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새로운 경제 활동의 등장으로 인해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비용 인정 기준이다. 사업 비용의 인정 기준은 납세자의 세 부담에 큰 영향을 준다.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해석과 행정 기관의 집행 간의 조화 관련이다. 법원의 판결과 행정 기관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과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법원과 행정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헌법적 해석의 중요성이다. 세법 관련 소송에서 헌법적 해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정한 과세 방식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훈철, “의료용 대마 사용에 대한 의견 현황과 미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25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9.
- Barber, Chris, Public Enemy Number One: A Pragmatic Approach to America’s Drug Problem, RICHARD NIXON FOUNDATION (Nov. 10, 2020, 5:09 PM), <<https://www.nixonfoundation.org/2016/06/26404/>>(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Berke, Jeremy & Gal, Shayanne, All the States Where Marijuana is Legal—and 5 More that Just Voted to Legalize It, BUS. INSIDER (Nov. 6, 2020), <<https://www.businessinsider.com/legal-marijuana-states-2018-1>>(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Blake, Melissa Kuipers, Marijuana and the 10th Amendment: Strange Bedfellows or Natural Allies, L. WEEK COLO. (Apr. 15, 2019) <<https://www.bhfs.com/Templates/media/files/Marijuana%20and%20the%2010th%20Amendment.pdf>>(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Californians Helping to Alleviate Med. Problems, Inc. v. Comm’r of Internal Revenue*, 128 T.C. 173, 181 (2007).
- Cantley, Beckett & Dietrich, Geoffrey, The Cannabis Conundrum: Constitutional & Policy Concerns in Taxation of the Marijuana Industry, 10 *Legis. & Pol’y Brief* 39, 57-58 (2021).
-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Legalized Marijuana, CENTENNIAL INST. 3 (Nov. 18, 2018), <<http://cdncentennial.pressidium.com/centennial/wp-content/uploads/2019/03/Economic-and-Social-Costs-of-LegalizedMarijuana-v1.3.pdf>>(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Fertig, Natalie, Coronavirus spells doom for federal cannabis legislation, POLITICO (May 12, 2020), <<https://www.politico.com/news/2020/05/12/coronavirus-cannabis-legislation-252313>>(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Haffajee, Rebecca L., MacCoun, Robert J. & Mello, Michelle M., Behind Schedule—Reconciling Federal and State Marijuana Policy, 379 *NEW ENG. J. MED.* 501, 501 (2018).
- Howell, Kellan, This Congressman Says the New Congress Could Legalize Weed, NEWSY (Jan. 7,

- 2019), <<https://www.news1.com/stories/earl-blumenauer-legal-weed-could-pass-in-new-congress>>(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Jaeger, Kyle, Congress Planning Vote on Federal Marijuana Legalization Bill in September, *Sources Say, MARIJUANA MOMENT* (July 24, 2020), <<https://www.marijuanamoment.net/congress-planning-vote-on-federal-marijuana-legalization-bill-in-september-sources-say/>>(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Jensen, Erik M., Did the Sixteenth Amendment Ever Matter? Does it Matter Today?, 108 *NW. U. L. REV.* 799, 814 (2014).
- Just Say No, *HISTORY* (Aug. 21, 2018), <https://www.history.com/topics/1980s/just-say-no> (describing surge in nonviolent drug offense incarcerations from 50,000 in 1980 to 400,000 by 1997).
- McCarthy, Justin, Two in Three Americans Now Support Legalizing Marijuana, *GALLUP* (Oct. 22, 2018), <https://news.gallup.com/poll/243908/two-three-americans-support-legalizing-marijuana.aspx?g_source=link_news19&g_campaign=item_258149&g_medium=copy>(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McKillop, Liam, Note, Pass the Revenue: How Section 280E is Harming the Medical Marijuana Industry, 2 *INT'L COMP. POL'Y & ETHICS L. REV.* 849, 850 (2019).
- Mohebbi, Nima H., Greenberg, Samuel T. & Speir, Ian S., Crafting a Constitutional Marijuana Tax, 69 *TAX LAW.* 214, 215, 213-230 (2015).
- Singer, Jeffrey A., AG Barr Signals Support for Tenth Amendment-Style Approach to Marijuana Legalization, *FOUND. FOR ECON. EDUC.* (Apr. 12, 2019), <<https://fee.org/articles/ag-barr-signals-support-for-tenth-amendment-style-approach-to-marijuana-legalization/>>(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TAX FOUNDATION, Green Rush: Principles for Taxing Cannabis, <<https://taxfoundation.org/taxedu/videos/cannabis/>>(last visited October 31, 2024)
- Vigorito, John, Comment, Creating Constitutional Cannabis: An Individual State's Tenth Amendment Right to Legalize Marijuana, 46 *U. TOL. L. REV.* 221, 223 - 24 (2014).
- Washington Marijuana Revenues, And Health, *WASH. ST. TREASURER*, <<https://tre.wa.gov/portfolioitem/washington-state-marijuana-revenues-and-health/>>(last visited Nov. 18, 2020).



제3주제 토론문①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황헌순(계명대학교 교수)

[토론문]

마리화나 과세의 합헌성 논쟁

헌법적 한계와 법적 과세

황헌순(계명대 세무학과 조교수)

먼저 조세법학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두형 회장님과 여러 학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발제를 통해 마리화나 과세의 합헌성 논쟁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창규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과거에는 대마라고 하는 것이 마약이라는 것과 같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구성물질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발견되어, 우리 생활에서 약품, 식품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제문에서도 미국에서의 역사적 경위를 통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세의 영역에서는 마리화나 과세, 이에 대한 비용공제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발제자께서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마리화나가 불법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IRC 제162조는 모든 영업 또는 사업(trade or business)의 수행상 그 과세연도에 지불했거나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은 모두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1) 해당 지출이 경제적 합리성에 적합한 지출일 것, (2) 지출 자체 또는 지출의 발생원인이 법질서에 위반되는 등에 의해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점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발제문은 마리화나 과세에 대한 합법성이라는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그 연구방법 혹은 연구소재로서 마리화나 과세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세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실질과세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발제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발제문을 읽은 후 토론자의 소회를 첨언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인정된다면, 이를 얻기 위한 비용이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미국법상의 공서이론(Public Policy)과 같은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손금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법보다는 사회상규 혹은 도덕을 법적인 판단기준으로 편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형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법에서 사회상규 등을 기준으로 비용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것은 애초 순자산증가설을 바탕으로 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과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어쨌든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해당 사업 또는 거래와 관련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적법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그 원인관계의 적법, 유효성은 묻지 않는다고 한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과세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 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¹⁾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²⁾

물론 그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이 과세기준이 된다면, 이는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국민의 법감정이 기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세법률로서 규정하여 인정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몰수·추징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³⁾

위의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몰수·추징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과세권자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쁜 행위로 인한 이득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은 부정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위법소득으로 인한 과세되는 자에게는 조세부담만 가중되는 역차별과 조세의 형벌화와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은 형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것이며, 조세가 형사벌과 같은 제재적 성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조세와 세법의 한계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금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이창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2) 이에 대해 인신매매와 같이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번 경우나 절도행위처럼 형사적 처벌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한 경우에는 위법거래과세일반론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4, 189면.

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제3주제 토론문②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 : 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배효성(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마리화나 과세의 합헌성 논쟁 : 헌법적 한계와 법적 과제

*배효성¹⁾

I. 서 론

오늘 한국조세법학회 학술행사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두형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마리화나 과세의 합헌성 논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이창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마리화나 과세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마리화나 과세에 대한 헌법적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과세 논쟁을 중심으로,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상황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본 론

1. 미국의 마리화나 과세 논쟁: IRC § 280E 조항

미국에서는 IRC § 280E 조항으로 인해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고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화나가 연방 법상 불법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업체들이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마리화나

* 본 토론문의 내용은 학술적 관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되었음

1)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법학박사

산업체에 대해서도 IRC § 280E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헌법적 문제점 분석

-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 연방법상 마리화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여 주법과 연방법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소득의 정의)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과, 주법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므로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비용 인정 기준) 마리화나 생산 및 판매에 사용된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IRC § 280E 조항은 마리화나 관련 사업비용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 (법원의 해석) 법원은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비용 공제 제한이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이 항상 일관되지는 않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헌법적 해석) 마리화나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법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의 자유 시장 경제 원칙, 평등의 원칙 등과 관련된 다양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3. 발제문의 시사점

- (새로운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기준 마련) 마리화나 산업과 같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에 맞는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기준의 합리화) 마리화나 생산 및 판매에 사용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법원의 해석 변화에 대한 대비) 법원의 해석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연한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 마리화나 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마리화나 과세는 사회,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과세 논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기준 마련, 소득의 정의, 비용 인정 기준, 법원의 해석, 헌법적 해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질문 사항

- 마리화나 과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당한 조치인가?
- 마리화나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법원의 해석이 마리화나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과세 문제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



제4주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이한우(세무사, 화우세무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한우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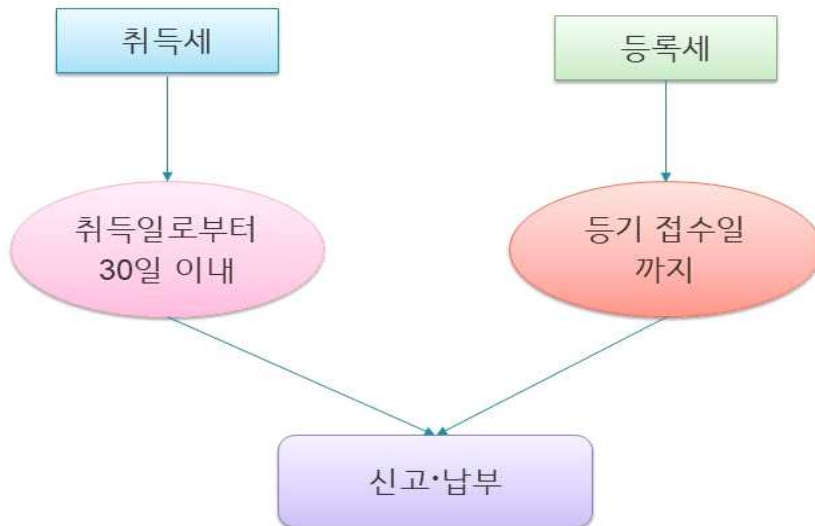
I. 서론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2011년 이전(취득세와 등록세 구분)			2011년 이후(통합 취득세)	
소유권 보존	취득세(단일세율)	2%	취득세 (원시취득)	2.8%
	등록세	0.8%		
	합계 세율	2.8%		
소유권 이전	취득세(단일세율)	2%	취득세	4%
	등록세	2%		
	합계 세율	4%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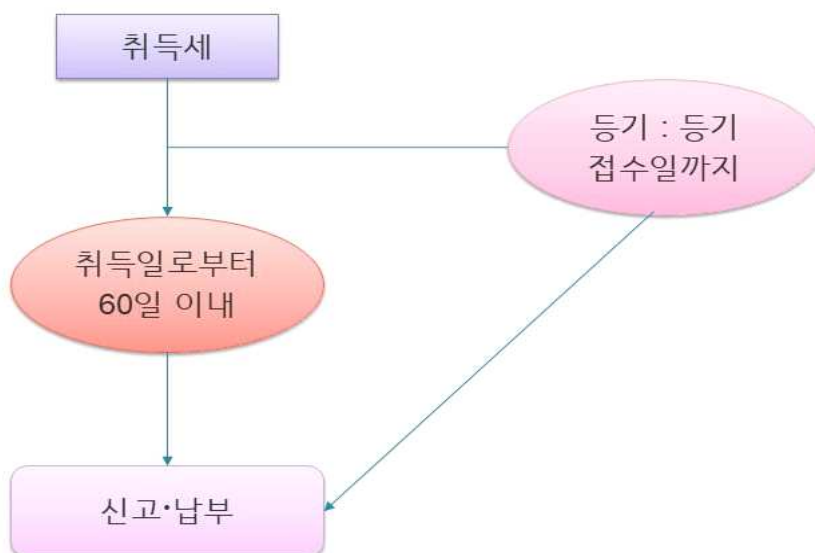
❖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 과세 이전



3

I. 서론

❖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 과세 이후



4

I. 서론

❖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

<문제 1> 등기 접수 후 취득세 신고·납부(무신고가산세/납세협력비용 증가) :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주소 생략)에 있는 17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법무사를 통해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은 2015. 6. 3. 18:21경 접수되었다.

나.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5. 25.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2015.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6. 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등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I. 서론

❖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

<문제 2> 법무사 불법 세무대리(법무사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

- **법무사들의 지방세 대납 결제 규모는 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 기준 해당 영업을 강력히 시행 중인 A카드사가 월 6000억원 이상, B카드사가 월 3000억원 이상의 취급액을 기록했고, **혜택을 받은 법무사도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사들이 고객에게 받는 **지방세 대납 수수료 외에 추가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단순하다. 부동산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그러면 카드사들이 결제액에 따라 **0.5% 안팎(0.2%~0.7%)의 캐시백**을 돌려준다. 결제 뒤에는 카드사의 즉시 출금 서비스를 활용해 해당 결제대금을 납부하고 소진한 한도를 되살려 또 다른 대납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아시아경제(2021.9.10.), 법무사만 배 불리는 지방세 카드 대납...리베이트로 폭리

6

I. 서론

❖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

<문제 2> 법무사 불법 세무대리(법무사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

- 국세청이 고객의 지방세 카드 대납에 대한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법무사 1600여명을 적발하고 누락금액에 대해 174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카드 대납으로 법무사 1인당 평균 5400여만원의 캐시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대상(1,623명) 업종별 분포

업종	법무사		전문직 (변호·세무·회계·등)		차량등록·판매		부동산 (건설·판매·자문)		기타		합계
	사업	근로	사업	근로	사업	근로	사업	근로	사업	근로	
인원	647명	727명	49명	54명	91명	9명	33명	0명	13명	0명	1623명
캐시백	330억원	350억원	31억원	33억원	101.4억원	10억원	14억원	0원	14억원	0원	883억원

머니투데이(2024.11.5.) 세금 대납후 캐시백 미신고한 법무사들... 174억원 추징

-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캐시백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7

II.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 부동산 취득 = 소유권 취득

- 법률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 등기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 매도인(A) : 이중매매, 담보대출 위험

8

II.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 부동산 취득 = 소유권 취득

- 법률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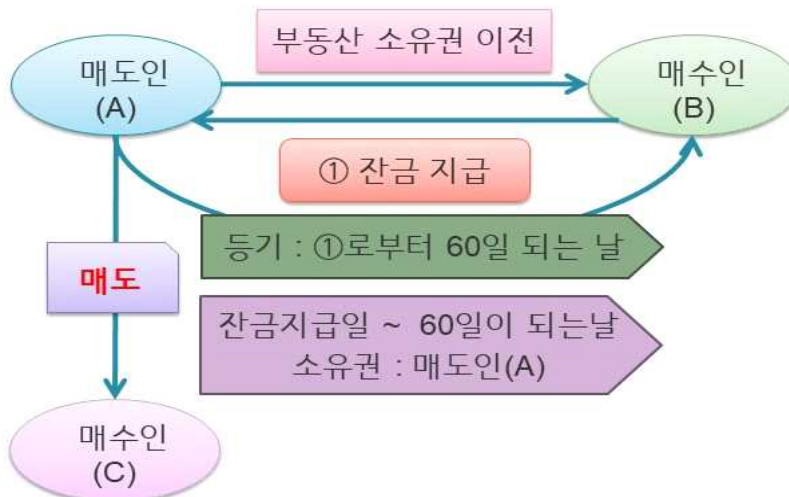
-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 ①과 ②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① : 잔금 지급일
 ②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9

II.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 부동산 취득 = 소유권 취득

- 만약, ②를 선택한다면



- 매도인(A)의 이중매매 : 소유권은?

10

Ⅱ.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 부동산 취득 = 소유권 취득

▪ 만약, ②를 선택한다면

- 매도인(A)의 이중매매 : **소유권은 매수인(C)**, 매수인(B)은 소유권 상실과 더불어 매매 대금 채권의 회수 불가능도 존재할 수 있음

▪ 실무적으로 매도인의 이중매매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취득세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시점에 신고·납부하고 그 시점에 등기를 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음

-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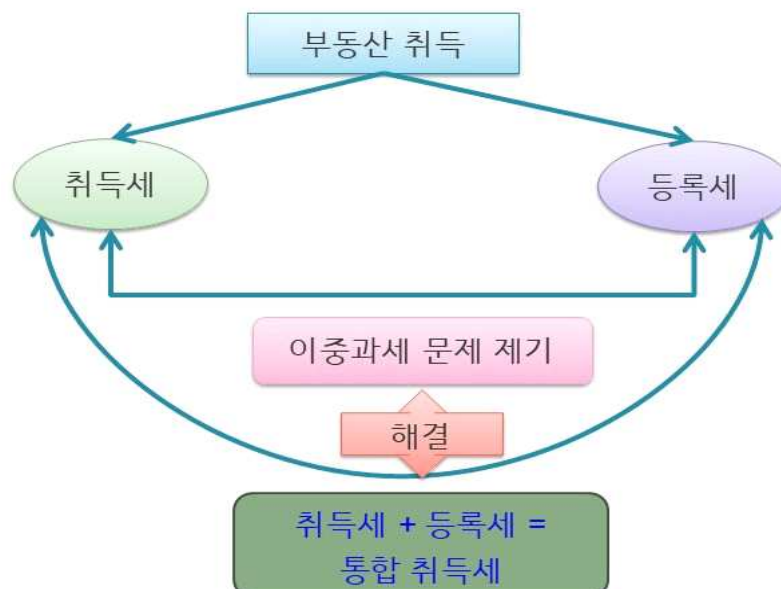
• 즉, **취득세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함**

- 이로 인해 통합 취득세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11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1.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12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1.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 서울 통합

2011년 이전(취득세와 등록세 구분)			2011년 이후(통합 취득세)	
소유권 보존	취득세(단일세율)	2%	취득세 (원시취득)	2.8%
	등록세	0.8%		
	합계 세율	2.8%		
소유권 이전	취득세(단일세율)	2%	취득세	4%
	등록세	2%		
	합계 세율	4%		

※ 출처 : 조세심판원 2019. 9. 27. 2018지884 결정

■ 신고·납부기간 통합

- 구 취득세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 등록세 신고기한 : 등기접수일까지
- **통합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까지**

13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1.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 취득세 :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

- 취득 = 소유권 취득 → **소유권의 형식적 취득**
- 민법 :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
- 「지방세법」 및 「민법」에서 의미하는 **소유권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서 그 형식은 등기, 잔금 지급일, 계약일 등 다양**
- 그렇다면 등기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여러 가지 형식 중 하나로서 그 등기행위도 취득으로 볼 수 있음**

■ 등록세 : 등기행위에 대해 과세

- 부동산 등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등기를 소유권의 형식적인 취득 행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본질은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부동산 취득 행위 : 취득세, 등록세 과세 → 이중 과세

14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1.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구조

구 분	취득세 성격	등록세 성격		이중과세 여부
		등록세	등록면허세	
부과제척기간 내 신고	2%로 과세	2%로 과세	없음	각각의 세율 2%로 이중과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과세할 수 없음	없음	2%로 과세	

-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 구조

구 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중과세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과세할 수 없음	2%로 과세	각각의 세율 2%로 이중과세
사용승인 시점	2%로 과세	없음	

15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1.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 환매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이중과세 구조

구 분	취득세 성격	등록세 성격	이중과세 여부
과세 여부	비과세	과세	세율 2%로 이중과세
세율	없음	2%	

- 이중과세는 해소되었는가?
 - 다수 의견 : 통합 취득세로 이중과세 문제 해결
 - 다수 의견이 타당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하나의 세목으로만 과세
- 그러나 여전히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으로 과세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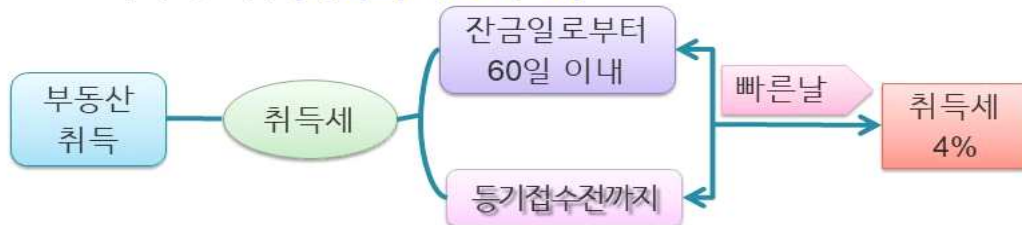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2. 등기 전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 통합 취득세 이전



▪ 통합 취득세 이후(취득세 자금 부담)



17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2. 등기 전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한의 이익 박탈**
- 등기접수 마감 시간 압박
 - 매도인의 이중매매 방지 및 순위보전 효력을 위해 먼저 등기
 - 등기 후 그 다음날 취득세 신고납부
 - 하루 차이로 무신고가산세 20% 부담

18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3. 불법 세무대리의 묵인

- 부동산 등기신청에 앞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목

구 분	2011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	○(통합 취득세)
등록세	○	○(통합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법무사의 업무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19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3. 불법 세무대리의 묵인

-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단순한 납부대행인가?**
 - 취득세는 신고로 납세의무 확정
 -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신고라는 확정이 필요
 - 취득세 신고·납부는 단순한 납부대행이 아닌 세무대리
 -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납세편의 제고라는 명목으로 법무사가 불법 세무대리를 자행**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묵인**
- 통합 취득세 이전에는 단순한 등록세에 대한 신고대리로서 등록세에 대한 지방세법 조문은 13개로 매우 단순한 구조였음
- 그러나 통합 취득세는 법무사가 **취득세 증과 및 감면 신청 업무**까지 함으로써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업무가 질적·양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20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3. 불법 세무대리의 묵인

- 통합 취득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법무사 불법 세무대리 비교

구 분	통합 취득세 과세	
	이 전	이 후
세무대리 세목	등록세	통합 취득세
업무 범위	등록세 신고 대행 및 감면 신청	통합 취득세 신고 대행 및 감면 신청
판단 근거	지방세법 제124조부터 제151조의2까지	▶ 지방세법 제6조부터 제22조의4 까지(취득세) ▶ 지방세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 지(등록분 등록면허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부터 제 97조의2까지(취득세 감면)

21

Ⅲ.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

4. 통합 취득세의 정체성

- 등록세(취득 관련)와 취득세를 통합하여 통합 취득세로, 등록세(취득 관련 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설함으로써 세목 수는 축소되었으나 **각 세목 안에 다른 세목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통합 취득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는 기존 세목으로서 등록세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고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는 통합 취득세로, 그외의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면서 등록면허세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목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목하에 서로 다른 세목이 공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예는 **미완성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후 통합 취득세 과세하는 것임(이것은 취득세인가? 등록세인가?)**

22

IV. 개선방안

1.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 배제

-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그대로 계승
 - 대부분의 국가가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과세
 - 우리나라와 일본은 두 가지 세목 모두에 과세
- 1976년 부가가치세 신설을 계기로 국세인 등록세와 지방세인 유흥음식세와 서로 교환함으로써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
 -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의 25.3%) : 1976년 지방세 감소에 대한 세수 보전은 이미 해결
 -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 폐지

23

IV. 개선방안

1.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 배제

-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

구 분		지방세법	내 용
취득행위의 유형에 따른 세율		제11조 제1항	취득행위 유형을 상속, 상속 외 무상취득, 원시 취득, 공유물 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 기타로 구분하여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세율의 특례		제15조 제1항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하나만 과세 되는 취득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등기접수일까지 신고납부		제20조 제4항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록 면허세 과세	제척기간 경과	제23조 제1호 다목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 규정임
	등기 후 취득	제23조 제1호	부동산 등기 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등기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 규정임

24

IV. 개선방안

1.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 배제

- **통합 취득세 세율에 대한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1조 개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상속 등 취득의 유형에 따른 세율)는 폐지

25

IV. 개선방안

2.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폐지

-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 : 납세협력비용 증가, 법무사의 취득세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혼재로 인한 정체성 문제
- 지방세법 제20조 개정

현 행	개 선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6

IV. 개선방안

2.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폐지

-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 폐지 : 취득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 →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
- **해결 방안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정**

현행	개선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다만, 지방세 중 취득세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登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

27

IV. 개선방안

2.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폐지

-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 마련 : 분납제도 및 가산세 감면**
- 취득세 신고에 대한 분납제도 도입

현행	개선
<신설>	지방세법 제20조의2(분할납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IV. 개선방안

2.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폐지

-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 마련 : 분납제도 및 가산세 감면**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감면 제도 도입

현 행	개 선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④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로서 등기 후

29

IV. 개선방안

2.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폐지

-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 마련 : 분납제도 및 가산세 감면**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감면 제도 도입

현 행	개 선
	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하고 그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에 등기하고 그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초과 45일 이내에 등기하고 그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45일 초과 60일 이내에 등기하고 그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30

V. 결론

❖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온전히 취득세만 과세하는 입법 개선

-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배경
 -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
-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두 세목의 세율을 단순히 합산하고 신고·납부도 통합
 - 이중과세 문제
 - 납세협력비용 증가 문제
 -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문제
 - 취득세의 정체성 문제(취득세인가? 등록세인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에 내제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
 - **취득세율 2%로 통일**
 -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 폐지** : 어렵다면 취득세 분납제도 및 가산세 감면 제도 도입

31



제4주제 토론문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서윤식(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토론문

서윤식

발제문을 작성하시느라 발제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제문을 읽으면서 취득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1. 취득세 세율을 2%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발제자께서는 2011년부터 시행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이 통합되기 전의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합한 세율로 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면서,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¹⁾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2%로 하는 경우 등록세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전처럼 등록세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고 취득세 세율만 4%에서 2%로 낮추자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취득세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 되고 등록세를 부과한다면 종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 또는 취득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발제문에는 취득세에 등록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통합취득세의 세율이 통합전의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합한 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발제자께서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하여 취득세 등기 전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법무사에 의한 불법세무대리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으로 취득세 신고에 대한 분납제도 도입 및 가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은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자력이 있으면서도 각종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람들도 언론을 통하여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등기, 등록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또한 법무사들의 취득세 신고·납부의 불법대리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지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 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가 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하거나 또는 분납규정 및 가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들의 취득세 신고·납부의 대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참고> 발제문 요지

1.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따른 취득세 세율 및 신고납부기한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시행에 따라 취득세 세율과 신고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이 변경

<세율>

구 분	2011년 전 (취득세, 등록세 구분)		2011년 이후(통합 취득세)	
소유권 보존	취득세	2%	취득세 (원시취득)	2.8%
	등록세	0.8%		
	합 계	2.8%		
소유권 이전	취득세	2%	취득세	4%
	등록세	2%		
	합 계	4%		

<신고·납부기한>

구 분	통합전	통합후
취득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위 기한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록세	등기접수일	등기접수일

-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 이중매매, 담보 제공 등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과 더불어 매매 대금 채권의 회수 불가능도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되, 위 기한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며(등기 전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 ③ 취득세 신고·납부는 단순한 납부 대행이 아닌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임에도 납세편의 제고라는 명목으로 법무사가 불법 세무대리를 자행하고 있음(불법세무대리의 묵인).

3. 개선방안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함(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 배제)
-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되(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폐지)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으로서 취득세 신고에 대한 분납제도 도입 및 가산세 감면 제도 도입



제4주제 토론문②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박시훈(박사, 한국세무사회)

토 론 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시훈 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원 박시훈입니다.

먼저 귀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이한우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취득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까지 너무나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발표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지방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일세법 체계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었으며 16개의 세목이 통폐합을 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현행 취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단순화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기존 등록세의 성격이 일부 잔존하며, 세율 합산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과 신고·납부 시기의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한우 세무사님께서서는 통합 취득세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로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의 세목인 취득세로 통합하면서도,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통합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통합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부과되었으며, 납부 시점도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등기접수 전까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가능해졌으나, 등기접수일과의 연계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법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수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취득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행위가 아닌 세무대리로써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납세편의 제고라는 명목으로 법무사가 불법 세무대리를 자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취득세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통합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취득인지 등기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행정적 혼란이 초래되고, 동일 대상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특례 적용 취득세로 나뉘어 불합리한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 체계의 모호성은 통합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간의 구분 및 과세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지방세제의 단순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등록세와 면허세의 혼합적 성격을 내포한 미완성 구조로 남아 있다는 점을 현행 취득세의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납세협력비용 증가 문제,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문제, 정체성 문제는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구조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 취득세가 등기와 무관하게 순수히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등기행위와 연계된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폐지하거나, 취득세 분납제도 및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먼저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취득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합된 취득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단순 합산이 아닌, 통합된 세율 체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복잡해진 세율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측면으로의 개선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취득세 납부 체계는 2011년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합 이후, 등기 또는 등록을 위해 취득세 전액을 사전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등록세만을 우선 납부하고 취득세는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었던 과거의 체계와 비교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축소시키고 과세관청의 징세 편의만을 강화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 취득세의 도입 과정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세율이 단순히 가산되어 책정된 결과, 납세자는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명목 아래 조기에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세목 통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과세권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지방세법 제20조의2에 규정되어 있었던 취득세 분할 납부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5년 삭제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는 여전히 등기 신청 전 취득세 납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분할 납부 제도의 복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차량, 기계장비 등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납세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가 경제적 여건에 맞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¹⁾에 따르면,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지방세법에서 분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할 납부를 허용할 경우 일부 금액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법적 체계 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 내에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절차 간소화와 세수 조기 확보라는 과세 관청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불법세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도 이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 된 세무 대리인이 대행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구조로 신고와 납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고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감면 신청,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세법 해석 및 판단 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세무대리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등록 세무사, 등록 세무법인 공인회계사(세무 대리 등록 필수), 변호사(세무대리 등록 필수) 등으로 제한됩니다.(세무사법 제6조, 제16조의4, 제20조의2)

법무사는 세무대리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거 통합 취득세 도입 이전에는 등록세에 한정된 단순 신고대행 업 무를 수행하던 법무사가 통합 취득세 체계에서 감면 신청 및 세율 판단 등 복잡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질적·양적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무사법과 지방세법의 체계를 왜곡시키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정당한 업무 영역 을 침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논의 당시, 양 세목의 병존과 통합 중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중 한 세목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고, 과세 논리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취득세 로의 통합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 취득세로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합 취득세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수 증대, 실질과세 확대, 업무 효율성 증대, 이중과세 가능성 감소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납세자에게 중요한 선택사항 중 하나였던 납세 이연 혜택이 사라졌고, 기존에는 과세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 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 니한 경우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물건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단순히 세금 부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세율 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 관련 업무는 세무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꼽힐 만큼(복잡성과 잦은 개정 등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님의 발제를 통해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취득세가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사항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에 따라 (사)한국조세법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자”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자, 본 학회의 이름으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세논총」에 투고된 논문
2. 「조세논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3. 「조세논총」에 이미 게재된 논문
4. 기타 (사)한국조세법학회의 명칭으로 간행된 연구결과물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 및 학회의 책임

제 4 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25% 이상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거부, 수정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소명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7 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부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 9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 (저자추가 및 변경) ① 논문의 최종저자는 투고단계의 저자 외에 수정단계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저자만 인정된다.

② 논문심사가 종료되어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 및 저자순서 변경은 금지된다.

1. ‘저자추가’란 투고단계에서의 저자 외에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저자변경’이란 저자추가는 없지만 기존저자가 빠지고 새로운 저자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저자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교신저자가 수정단계에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참고로 하여 전체 저자들에게 허락을 득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저자들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④ 교신저자가 공동저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한사람의 공동저자라도 저자변경 및 저자추가를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저자추가 및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게재가능 판정 이후 교신저자가 임의로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취소된다.

제13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4 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 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4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5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절 연구부정행위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 및 연구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한국조세법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1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20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1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22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3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24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 6 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25조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7 장 윤리규정 시행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26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연구수행과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4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③ 연구자의 소속 기관 등의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의 소속 기관,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전체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를 학회에서 검증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0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 (판정)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조사결과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학회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8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2.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3년간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한국조세법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조세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4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발 행 처 | (사)한국조세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별관 2층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 전 화 | 02) 588-8183

| 홈페이지 | <http://ksti.kr/index.php>

| 편집·인쇄 | 한샘종합인쇄 ☎ 031) 8086-7944
